2019-04-15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2019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9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

2019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

총 괄 | 정문종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 · 조정 | 최미희 조세분석심의관
김태규 행정비용추계과장

윤성민 추계세제총괄과장
박철호 경제비용추계과장
이진우 사회비용추계과장
심혜정 소득법인세분석과장
이영숙 재산소비세분석과장

작 성 | 박연서, 성선애, 이택균, 윤주철
문지은, 이주호, 손명동, 이은미
유희수, 장만수, 이미연, 여은구
정혜승, 김정훈, 백경엽, 강민지
태정림, 박지원, 김효경

지 원 | 김정선

「2019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 02) 788-3778 | ace@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19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

2019. 4.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19. 4. 4.)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본 보고서는 2019년 3월 1일 현재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안된 의안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보고서에 게재된 일부 비용추계 사례의 경우, 의안정보시스템에 공시된 비용추계서의 추계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안의 발의 시점 이후에 생산된 최신 정보를 반영함에 따른 것으로, 각 추계 사례의 본문에 명시된 자료의 출처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간 사

국회예산정책처는 제 · 개정되는 법률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 · 점검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를 처음 시작한 2004년에는 비용추계 건수가 59건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가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전담기관이 되면서, 2014년에 557건이던 법안 비용추계 건수는 2015년에 1,994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3,179건으로 3년 만에 50%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법안 비용추계업무가 양적으로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추계기법 및 모형의 개발을 통하여 추계의 합리성과 법률안과의 정합성도 꾸준히 발전시켰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9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는 지난 해부터 금년 초까지의 기간 동안 의원발의 빈도가 높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법률안에 대하여 비용추계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유사 법률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가늠하고 법률안을 성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비용추계 사례집은 '지출법안'과 '수입법안'으로 나누어 법률안별로 주요 정책내용을 소개하고,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추가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규모를 추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쟁점이 되는 추계변수의 조정에 따라 시나리오별 비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내용 변화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등을 국회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지출과 수입 관련 법률안 전반에 대하여 비용추계 사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된 「2019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가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4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종 후

CONTENTS

요 약

제 1 장

지출법안

I. 보건 · 복지 분야 • 3

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국민연금법」 ····· 3
2.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대상 확대: 「국민연금법」 ····· 8
3. 중복급여 수급자의 연금급여 지급수준 확대: 「국민연금법」 ·· 13
4.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상향조정: 「기초연금법」 ····· 16
5.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아동수당법」 ····· 19
6. 미등록 장애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22
7.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산정기준 명시화 및 사후 정산제 도입: 「국민건강보험법」 ····· 25

II. 산업 · 농업 · 국토 · 교통 분야 • 30

1. 에너지 소외계층 냉방지원 확대: 「에너지법」 ····· 30
2. 폭염 및 혹한 등 재난 발생 월의 전기요금 지원: 「전기사업법」 ····· 34
3.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38
4. 쌀 목표가격 인상: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41

5. 농어업재해보험료 정부 지원율 인상: 「농어업재해보험법」 … 45
6.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교통안전법」 … 47

III. 교육 · 문화 · 여성 · 가족 분야 • 51

1. 고교무상교육: 「초·중등교육법」 … 51
2. 보건교사 의무배치: 「학교보건법」 … 55
3. 병설유치원 전담 조리사 등의 배치: 「유아교육법」 … 58
4.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예술인 복지법」 … 61
5. 손자녀돌보미 돌봄수당 지급: 「아이돌봄 지원법」 … 64

IV. 환경 · 노동 분야 • 67

1.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기준임금 변경: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67
2.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 인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71
3.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대상 사업장 확대: 「대기환경보전법」 .. 75
4.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설치: 「실내공기질 관리법」 … 79

V. 국방 · 보훈 · 보상 · 법제사법 분야 • 84

1.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병역법」 … 84
2.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 87
3. 특별검사 임명 및 운영: 「000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 … 90

CONTENTS

VI. 안전 · 행정 분야 • 93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국회의원 정수 증가: 「공직선거법」 ····· 93
2. 어린이통학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용 지원: 「도로교통법」 · 96
3.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지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00
4. 전자청원시스템 도입: 「국회법」 ····· 104

제 2 장

수입법안

I. 소득과세 분야 • 111

1.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소득세법」 ····· 111
2. 근로장려금 관련 2018년 개정사항: 「조세특례제한법」 ····· 115
3. 방송 통신요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 120
4. 소득세율 인상 및 최고 과표구간 확대: 「소득세법」 ····· 123

II. 법인과세 분야 • 127

1. 법인세율 조정(인상·인하): 「법인세법」 ····· 127
2. 최저한세율 조정(인상·인하): 「조세특례제한법」 ····· 131
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 135

4. 혁신형 제약기업 기술대여소득 과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 138
5.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제지원 확대:「조세특례제한법」 · 141

III. 재산과세 분야 • 144

1.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인하:「상속세 및 증여세법」 ·· 144
2.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율 인상:「종합부동산세법」 ·· 147
3. 운송사업용 전기버스 취득세 면제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 ·· 150
4.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 153

IV. 소비과세 분야 • 156

1. 보건용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 156
2. 주택용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부가가치세법」 ····· 159
3. 발전용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개별소비세법」 ····· 162
4.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개별소비세법」 ····· 165
5. 증권에 대한 거래세율 인하:「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 169
6. 지방소비세율 인상:「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 174

요 약

「2019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의 발간취지 및 구성 · 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간취지

- 법안의 주요내용 및 제도 소개, 추계의 변수를 선별하여 시나리오별로 추계정보 제공
- 의원발의 빈도가 높은 법안의 비용추계 사례를 제시하여, 유사 법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가늠하고 법안을 성안 · 발의할 수 있도록 함

구성 · 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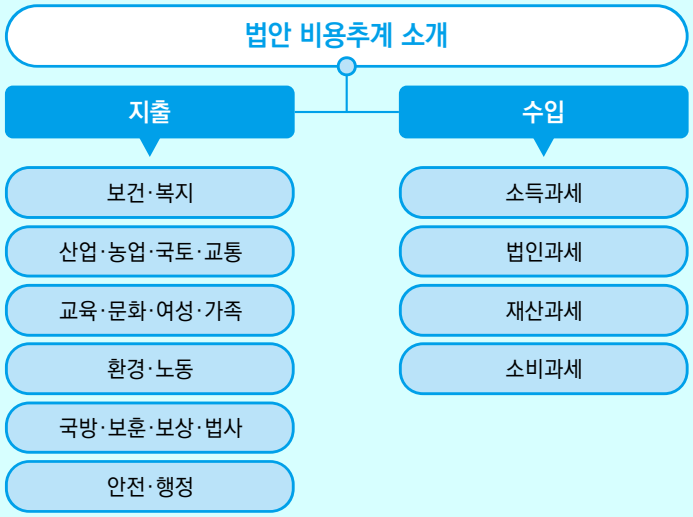

법안 비용추계 제도

• 법안 비용추계

법안 비용추계란 발의 · 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을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추산하는 것으로, 법안이 가결되어 시행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재정지출 및 수입의 증감액, 재정부담 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

법안 비용추계는 소요비용을 추계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용-편익분석과 유사하지만, 법안의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화폐적 · 회계적 비용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경제학적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는 비용-편익분석과는 차이가 있음. 그리고 입법에 대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입법영향분석과 유사하나, 입법에 따르는 재정적 측면의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국가나 사회에 미칠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는 입법영향분석과 차이가 있음

• 국회의 법안 비용추계 연혁

1973년 「국회법」(1973.2.7. 전부개정)에서 예산명세서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실제 예산명세서가 첨부되기 시작한 것은 제13대국회인 1988년부터임. 제13대국회부터 제16대국회까지 예산명세서 첨부실적은 총 의원발의 법안건수 대비 3.8%(121건/3,171건)에 불과하였으나, 제17대국회(2004.5.30.~2008.5.29.)에서 2005년 「국회법」이 개정되고 2006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법안 비용추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였음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재정수반 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안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수정된 재정수반 의안의 심사보고서에도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안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2014년 3월 공포, 2015년 3월 시행)이 있었음. 이에 따라 2015년부터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안 비용추계 회답건수와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건수가 크게 증가함

• 법안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단위: 건)

	의원발의		정부제출		위원회제안		합 계	
	전체	첨부	전체	첨부	전체	첨부	전체[1]	첨부
제17대국회 ('04.5.30~'08.5.29)	5,728	1,372	1,102	245	659	17	7,489	1,634 (21.8%)
제18대국회 ('08.5.30~'12.5.29)	11,191	3,897	1,693	522	1,029	9	13,913	4,428 (31.8%)
제19대국회 ('12.5.30~'16.5.29)	15,444	4,077	1,093	328	1,285	23	17,822	4,428 (24.8%)
제20대국회 ('16.5.30~)	16,545	3,267	888	210	899	249	18,332	3,726 (20.3%)

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상의 법률안(2019. 3. 6. 기준)으로 재정수반이 포함되지 않은 법률안도 포함된 수치임

• 법안 비용추계서 회답 실적

(단위: 건)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지출	54	145	146	143	402	442	455	414	661	685	376	1,623	2,521	2,921	2,722
수입	5	23	40	78	177	146	109	171	194	181	181	371	499	486	457
합계	59	168	186	221	579	588	564	585	855	866	557	1,994	3,020	3,407	3,17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법안 비용추계서 회답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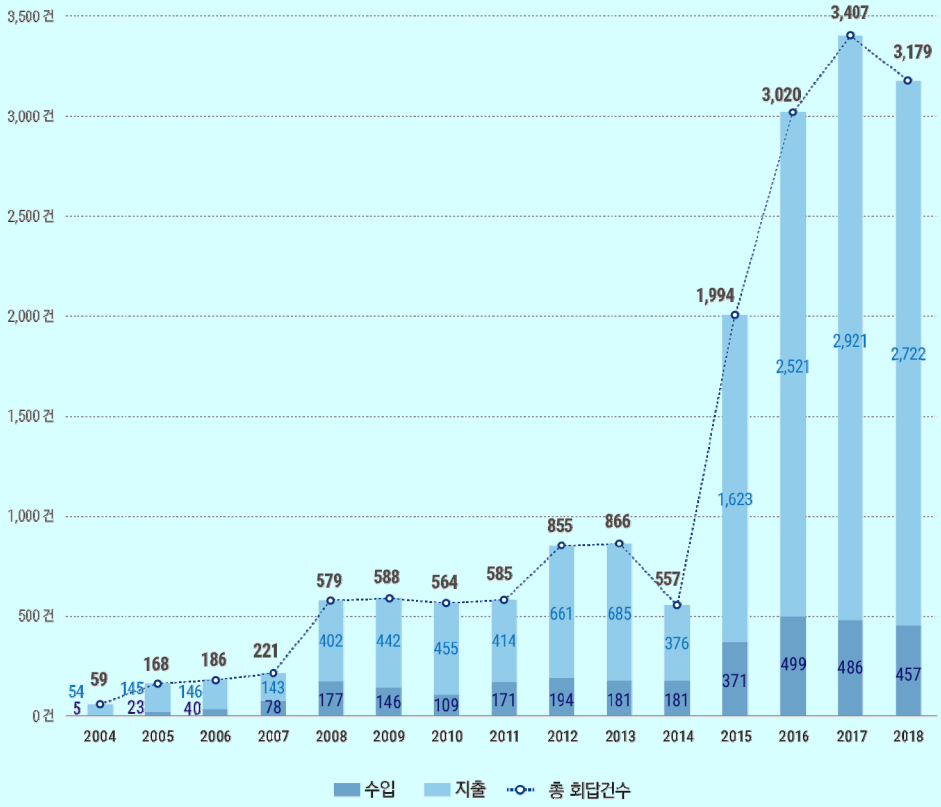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법안 비용추계서 요구 및 제출 절차

법안 비용추계 요구	▸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의원, 위원회 → 국회예산정책처장)
⌄	
법안 비용추계서 작성	▸ 지출·수입증감(추계세제분석실) ▸ 요구된 법안 비용추계에 대하여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추계서 미대상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
⌄	
법안 비용추계서 회답	▸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국회예산정책처장 → 의원,위원회)
⌄	
국회의장에게 제출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 재정수반 의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발의(의원, 위원회) ▸ 이미 발의된 의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만 제출

보건·복지 분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19년 44.5%→'28년 40%)에서 • 2021년 이후 소득대체율을 45%로 상향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6조 6,681억원 • 2021년 이후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13조 3,362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대상 확대: 「국민연금법」	출산크레딧을 현행 수준(둘째 12개월, 셋째 이상 18개월씩/총 50개월 한도)에서 • 2020년 이후 첫째부터 12개월씩(50개월 한도) 적용할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7,591억원 • 2020년 이후 첫째 6개월, 둘째 12개월, 셋째 이상 18개월씩(50개월 한도) 적용할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4,205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중복급여 수급자의 연금급여 지급수준 확대: 「국민연금법」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급자가 노령연금 선택 시 유족연금액의 30%를 지급하는 현행 수준에서 • 유족연금액의 40%를 지급할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318억원 • 유족연금액의 50%를 지급할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635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 상향조정: 「기초연금법」	소득하위 70%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인 현행 253,750원에 대하여 • 2019년에 소득하위 20%인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7,141억원 • 2019년과 2021년에 각각 소득하위 20%인 노인과 소득하위 20~70%인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1조 9,374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아동수당법」	현행 아동수당(10만원) 지급기준 연령을 0~6세에서 • 0~8세 이하 아동으로 확대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1조 2,854억원 • 0~15세 이하 아동에게 단계적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15조 7,663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미등록 장애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록이 어려운 장애 아동에게 의료비 지원을 도입하면서 • 0~5세 이하 미등록 장애 아동 50%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5억 2,700만원 • 0~12세 이하 미등록 장애 아동 50%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9억 1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 산정기준 명시화 및 사후정산제 도입: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산정기준을 현행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4%에서 •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4%로 변경할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5,940억원,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6%로 변경할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1조 8,812억원 • 국고지원금이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과소 지원된 경우 2년 후 그 차이를 사후 정산할 경우(시나리오 3) 연평균 1조 8,407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산업·농업·국토·교통 분야

에너지 소외계층 냉방지원 확대: 「에너지법」	폭염 등의 하절기에 에너지 소외계층이 적정수준의 냉방을 유지하도록 • 냉방 바우처를 지급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77억원 • 냉방기기를 지급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247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폭염 및 혹한 등 재난 발생 월의 전기요금 지원: 「전기사업법」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의 전기요금 미납요금을 지원하는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확대하여 • 폭염 및 한파 재난 발생 월의 전기요금을 100분의 30 이상 감면할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952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 폭염 재난 발생 월의 전기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하고 이를 전력기반기금으로 지원할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378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및 2,762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상인들이 납부한 공제료로 조성된 화재공제사업에 정부는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에서 •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료 50%를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614억원 •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료 100%를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1,227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쌀 목표가격 인상: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업소득 보전과 관련하여 쌀 목표가격을 현행 2,352원/㎏(188,192원/80㎏)에서 • 2018년산부터 2022년산까지 3,065원/㎏(245,200원/80㎏)으로 인상하는 경우 연평균 1조 1,127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농어업재해보험료의 정부 지원율 인상: 「농어업재해보험법」	국가가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 70%로 인상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1,614억원 • 60%로 인상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1,319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교통안전법」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 한해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되,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현행에서 • 모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193억원 •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60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교육·문화·여성·가족 분야

고교무상교육: 「초 · 중등교육법」	현재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실시되는 무상교육을 고등학교로 확대하면서 • 고등학교에 대해 전면적인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1조 5,998억원 • 고등학교에 대해 입학금 및 교과서용 도서구입비, 학교운영비, 수업료(학년별)를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1조 2,759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보건교사 의무배치: 「학교보건법」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가 배치되는 현 상황에서 • 고등학교 이하 모든 학교에 1인의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학생 수 600명 이상 학교에는 2인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되, 보건교사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20%씩 연차적으로 충원·배치하는 경우 연평균 3,304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병설유치원 전담 조리사 등의 배치: 「유아교육법」	현재 거의 배치되어 있지 않은 병설유치원 전담 조리사를 • 모든 병설유치원에 배치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1,411억원 • 일부 병설유치원에 전담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배치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130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예술인 복지법」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을 적용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면서 • 프리랜서 예술인 월평균보수를 월 73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33억원 • 월평균보수를 월 91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41억원 • 월평균보수를 월 165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시나리오 3) 연평균 72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손자녀돌보미 돌봄수당 지급: 「아이돌봄 지원법」	조부모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 손자녀돌봄수당 월 20만원을 9개월간 지급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524억원 • 손자녀돌봄수당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급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670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환경·노동 분야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기준임금 변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출산전후휴가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기준임금을 현행 통상임금에서 • 평균임금(통상임금의 1.18배 수준 가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연평균 537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의 인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부담기초액의 가산율을 현행 6%/20%/40%에서 • 12%/40%/80%로 2배 인상할 경우 연평균 1,221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미고용으로 인한 연평균 10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대상 사업장 확대: 「대기환경보전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미설치 배출시설에 대해 • 방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 연평균 640.8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설치: 「실내공기질 관리법」	어린이집 ·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기기를 신규로 설치하면서 • 국공립 어린이집 · 노인요양시설에 (예비)형식승인을 거친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191.9억원 • 전체 어린이집 · 노인요양시설에 성능인증을 거친 '실내공기질 간이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비 및 지방비를 일정비율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3.4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국방·보훈·보상·법제사법 분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병역법」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면서 • 대체복무요원의 대체복무 기간을 27개월로 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151억원 • 대체복무요원의 대체복무 기간을 60개월로 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240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방지 및 보상: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제도를 도입하면서 •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전보상 없이 주민지원사업과 소음피해 국가보상을 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4,537억원 •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민지원사업과 소음피해 국가보상에 더하여 90웨클 이상인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에 대한 이전보상을 포함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2조 7,837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특별검사 임명 및 운영: 「OOO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	특별검사를 임명하면서 •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 등을 임명하고, 120일의 수사기간, 7개월의 공소유지기간을 설정할 경우 단년도에 56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안전·행정 분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국회의원 정수 증가: 「공직선거법」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함께 운용되는 현행 제도에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16명으로 증원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126억원 • 국회의원 정수를 인구 15만명 당 1명으로 규정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355억원 • 국회의원 정수를 인구 14만명 당 1명으로 규정하는 경우(시나리오 3) 연평균 552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어린이통학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용 지원: 「도로교통법」	어린이통학버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면서 •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에 설치비용의 50%를 보조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88억원 •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에 설치비용의 100%를 보조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177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지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면서 • 설치비용의 20%를 보조할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518억원 • 설치비용의 50%를 보조할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1,294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전자청원시스템 도입: 「국회법」	현행 종이문서의 형태로만 가능한 국회 청원에 •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시스템 구축에 12.7억원(단년도), 유지보수에 연간 1.3억원(3년간) 등 연평균 3억 3,1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2019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 요약 / 수입법안

소득과세 분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소득세법」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금융소득 기준을 현행 2천만원에서 •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3,362억원 •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세율을 14%에서 16%로 인상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5,976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근로장려금 관련 2018년 개정사항: 「조세특례제한법」	• 근로장려세제의 지급 요건을 변경(연령요건 폐지 및 소득·재산요건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는 2018년 개정사항이 • 2019년 시행되는 경우 연평균 2조 2,851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방송 통신요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소득자에 한해 방송·통신요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하면서 •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120만원으로 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1조 22억원 •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100만원으로 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8,352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소득세율 인상 및 최고 과표구간 확대: 「소득세법」	소득세율 및 최고 과표구간을 현행 수준(6/15/24/35/38/40/42%, 과표 5억원초과)에서 • 소득세율을 인상(24→25%, 38~42→45%)하고, 최고 과표구간을 확대(과표 5억원 초과→과표 1.5억원 초과)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4조 7,488억원 •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38~42→45%)하고, 최고 과표구간을 확대(과표 5억원 초과→과표 1.5억원 초과)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3조 9,518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법인과세 분야

법인세율 조정 (인상 · 인하): 「법인세법」	법인세율을 현행 수준(과세표준 구간별 10~25%)에서 • 과세표준 20억 초과구간의 세율 20~25%를 25%로 인상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6.24조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 9~22.5%로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6.05조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최저한세율 조정 (인상 ·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최저한세율을 현행 수준(중소기업 7%, 일반기업 과세표준 구간별 10~17%)에서 •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 12% 및 17%를 각각 14% 및 18%로 인상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2,815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 중소기업 및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 7% 및 10%를 각각 5% 및 8%로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559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현행 해당기업 재취업에서 • 모든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로 개정하는 경우 연평균 469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혁신형 제약기업 기술대여소득 과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현행 2021년 말)기한을 • 폐지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5억원 • 폐지하고, 과세특례 대상(현행 중소기업)에 혁신형 제약기업을 추가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11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제 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일몰(현행 2019년 말)기한을 • 5년 연장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180억원 • 3년 연장하고, 1인당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대비 2배 인상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360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재산과세 분야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율 인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간 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공제해주는 현행 신고세액공제 3%를 • 폐지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2,163억원 • 일감을 몰아주거나 떼어주는 기업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해 신고세액공제를 미적용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22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율 인상: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현행 장기보유 공제율(20년 이상 보유 50%)을 • 20년 이상 보유 60%로 인상하는 경우 연평균 19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운송사업용 전기버스 취득세 면제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운송사업용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 85%로 인상하는 경우 연평균 32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현행 취득세 감면요건(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m^2 이하)을 • 주택가액 요건을 4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경우(시나리오 1) 50억원 • 주택전용면적 요건을 85m^2 이하로 완화하는 경우(시나리오 2) 638억원 • 주택가액 요건과 주택전용면적 요건을 모두 완화하는 경우(시나리오 3) 1,007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소비과세 분야

보건용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보건용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 면세로 전환하는 경우 연평균 439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주택용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부가가치세법」	주택용 전기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 면세로 전환하는 경우 연평균 683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발전용유연탄 개별 소비세율 인상: 「개별소비세법」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부과되는 현행 개별소비세율(46원/kg)을 • 2024년까지 60원/kg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경우 연평균 5,226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등유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 조정: 「개별소비세법」	등유에 대해 부과되는 현행 개별소비세(세율 90원/ℓ, 탄력세율 63원/ℓ) 중 •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1,769억원 • 개별소비세율을 10원/ℓ로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1,488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증권에 대한 거래세율 인하: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현행 증권거래세율 0.3%(장외시장 0.5%)를 • 0.1%로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3.0조원 • 즉시 폐지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5.2조원 • 0.15%로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 3) 연평균 1.8조원 • 거래세율 단계적 폐지의 경우(시나리오 4) 연평균 4.8조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지방소비세율 인상: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율 15%를 • 20%로 인상하는 경우 연평균 4.6조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단, 지방세수는 4.6조원 증가 예상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제 1 장
지출법안

Ⅰ 보건 · 복지 분야

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19년 44.5% → '28년 40%)에서

- 2021년 이후 소득대체율을 45%로 상향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6조 6,681억원
- 2021년 이후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13조 3,362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국민연금의 연금급여액은 법률에서 정한 소득대체율을 산식에 적용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수준에 따라 연금급여액 변동

○ 소득대체율: 연금급여를 가입자의 재평가된 생애평균소득으로 나눈 값(OECD의 정의)

○ 현행법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에서 매년 0.5%씩 감소하여 2028년 40%가 된 후 유지됨(2019년 43.5%)

❑ 이러한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시 도달 가능한 수준으로, 실제 가입기간 고려 시 실질 소득대체율은 25~30%로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2017년 기준 전체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7년이었고, 20년 이상 가입한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5년

박연서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55, mileend@nabo.go.kr)

❑ 실질적 연금수급액을 높여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정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 발의

○ 한편, 정부도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반영하여 국회 제출(2018.12.24.)[1)]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2017. 5. 26.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18년 수준인 45%로 유지
	정춘숙의원	2017. 9. 1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18년 45%에서 2028년까지 50%로 상향 후 유지

기타	제출	제출일	주요내용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1)]	정부	2018. 12. 24.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021년 이후 45%로 인상 (보험료율 2031년까지 12%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021년 이후 50%로 인상 (보험료율 2036년까지 13% 인상)

주: 1)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함

1)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①소득대체율 45% 인상안(보험료율 12%로 인상)과 ②소득대체율 50% 인상안(보험료율 13%로 인상)을 제시함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인구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6년 발표)를 적용하고, 경제변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적용

- 장래인구추계는 합계출산율 중위가정을 기본으로 하되, 2019~2027년은 최근의 출산동향을 반영하여 저위가정 적용

○ 제도변수는 정부가 4차 재정계산에 적용한 가정을 동일하게 적용

- 국민연금 가입률, 지역가입자 가입률, 납부예외자 비율, 신규가입률, 가입자 종별 이동률, 징수율, 소득지수, 지역가입자 소득비율, 생애소득점수, 장애발생률, 유유족률 등

○ 소득대체율의 인상 시기는 2021년으로 하고, 이 시점에 일시에 소득대체율이 인상된다고 가정

- 정부가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소득대체율 인상의 경우 인상 시점을 2021년으로 하고 있어 이를 일치시킴

○ 연금급여액의 변화는 연금 수급시점에 발생하므로 상향조정된 소득대체율의 지출금액 변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계기간은 2021~ 2060년으로 함

○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이 장기이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불변가격으로 제시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후 연금급여액 - 현행 소득대체율 적용시 연금급여액

-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후 연금급여액 = 연금급여 유형별 수급자 수 × 소득대체율 45% 또는 50% 적용시 연금급여액
- 현행 소득대체율 적용시 연금급여액 = 연금급여 유형별 수급자 수 × 소득대체율 40% 적용시 연금급여액

3) 추가재정소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 또는 50%로 인상할 경우, 2021 ~ 2060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21~2060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6조 6,681억원
시나리오 2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13조 3,362억원

주: 추가재정소요는 2019년 불변가격 기준임

- (시나리오 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상향할 경우, 연평균 6조 6,681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 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할 경우, 연평균 13조 3,362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라. 참고사항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2018.12.24.)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현행유지,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강화방안 ①및 노후소득보장강화방안 ② 등 총 4가지 재정개혁 방안 제시

○ 현행유지: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 기초연금 강화방안: 기초연금액(30→40만원) 인상으로 노후소득 보장 수준 높아지지만 국민연금 제도는 현행과 동일

○ 노후소득보장강화방안 ①: 소득대체율 상향(40→45%), 보험료율 인상(9→12%)

○ 노후소득보장강화방안 ②: 소득대체율 상향(40→50%), 보험료율 인상(9→13%)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4가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현행유지 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②
주요 내용	소득 대체율	소득대체율 40%[1]	소득대체율 40%[1] + 기초연금 40만원	소득대체율 45%[2]	소득대체율 50%[2]
	보험료율	보험료율 유지 (9%)	보험료율 유지 (9%)	'31년 12% ('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	'36년 13% ('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
	기초연금 수준	'21년 30만원	'21년 30만원 '22년 40만원	'21년 30만원	'21년 30만원
정부전망	기금소진 시기	2057년	2057년	2063년	2062년

주: 1)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은 매년 0.5%P씩 낮아져 2028년 40%에 도달한 뒤 유지됨
2) 소득대체율 인상은 2021년부터 적용함
자료: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2018.12)

2.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대상 확대: 「국민연금법」

출산크레딧을 현행 수준(둘째 12개월, 셋째 이상 18개월씩/50개월 한도)에서

- 2020년 이후 첫째부터 12개월씩(50개월 한도) 적용할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7,591억원
- 2020년 이후 첫째 6개월, 둘째 12개월, 셋째 이상 18개월씩(50개월 한도) 적용할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4,205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출산·양육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 기회 상실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2008년 출산크레딧제도 도입

○ 출산크레딧: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로서, 연금수급 시기에 이를 가산하여 지급

- 자녀가 2인이면 12개월, 3인이면 30개월(18개월 추가), 자녀가 4인이면 48개월, 자녀가 5인 이상이면 50개월의 가입기간 추가

❑ 현행 출산크레딧제도는 둘째부터 지원하고 있어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을 지원하는 개정안 발의

박연서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55, mileend@nabo.go.kr)

○ 정부도 2018년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첫째 자녀부터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하는 제도개선 방안 제시

나. 관련 법률안 등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2016. 7. 8.	자녀 1명마다 36개월씩 추가 (한도 없음)
	남인순의원	2016. 7. 20.	자녀 1명마다 12개월씩 추가 (50개월 한도)
	김광수의원	2018. 11. 19.	자녀 1명마다 12개월씩 추가 (50개월 한도)

기타	제출자	제출일	주요내용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정부	2018. 12. 24.	첫째 자녀 6개월,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이상 18개월씩 (50개월 한도)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인구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6년 발표) 적용하고, 경제변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적용

- 장래인구추계는 합계출산율 중위가정을 기본으로 하되, 2019~2027년은 최근의 출산동향 반영하여 저위가정 적용

○ 제도변수는 정부가 4차 재정계산에 적용한 가정을 동일하게 적용

- 국민연금 가입률, 지역가입자 가입률, 납부예외자 비율, 신규가입률, 가입자 종별 이동률, 징수율, 소득지수, 지역가입자 소득비율, 생애소득점수, 장애발생률, 유유족률 등

○ 수급자가 평생 동안 출산한 자녀 수 및 출산 당시의 연령은 가용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로, 통계청의 '2017년 출산순위별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을 적용하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1)]

○ 추계기간은 2020년 첫째 자녀를 출산한 사람(32세)이 연금 수급자가 되는 시기 이후부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므로 2048~2065년으로 함

- 수급자의 연금개시 연령이 65세(완전노령연금)이지만, 조기노령연금은 60세부터 수급 가능하므로 일부 수급자의 경우 60세부터 64세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2048년부터 수급자 발생

○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이 장기이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불변가격으로 제시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 출산크레딧을 첫째부터 확대 적용 시 연금급여액 - 현행 출산크레딧 적용시 연금급여액

- 출산크레딧을 첫째부터 확대 적용 시 연금급여액 = 연금급여 유형별 수급자 수 × 연금급여액*

* 첫째자녀부터 가입기간 추가 산입하는 경우의 연금급여액으로서, 추가 산입 기간의 소득은 국민연금 A값[2)] 적용

1) 출산순위별 모(母)의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향후의 연령 변화를 추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최근의 실적치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2) A값(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서 연금 수급 3년, 2년, 전년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전년도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균한 금액임

- 현행 출산크레딧 적용 시 연금급여액 = 연금급여 유형별 수급자 수 × 연금급여액*

* 본래 가입기간(현행제도인 둘째 자녀부터 추가 산입) 적용 시 연금급여액으로서, 추가 산입 기간의 소득은 국민연금 A값 적용

〈시나리오별 추가 가산되는 출산크레딧 적용 개월 수〉

(단위: 개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인정 한도
현행 (누적)	- (-)	12 (12)	18 (30)	18 (48)	2 (50)	50
시나리오 1 (누적)	12 (12)	12 (24)	12 (36)	12 (48)	2 (50)	50
시나리오 2 (누적)	6 (6)	12 (18)	18 (36)	14 (50)	-	50

3) 추가재정소요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적용대상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2048~2065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48~2065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첫째부터 자녀 1인당 12개월 적용 (50개월 한도)	7,591억원
시나리오 2	첫째는 6개월을 적용하고, 둘째는 12개월, 셋째 이후는 18개월 적용(50개월 한도)	4,205억원

주: 추가재정소요는 2019년 불변가격 기준임

- (시나리오 1) 첫째부터 자녀 1인당 12개월씩 적용할 경우(50개월 한도), 연평균 7,591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 2) 첫째는 6개월, 둘째는 12개월, 셋째 이후는 18개월씩 적용할 경우(50개월 한도), 연평균 4,205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라. 참고사항

〈출산(양육)크레딧 해외사례〉

	독일	프랑스			스웨덴
종류	출산/양육 크레딧	아동양육 크레딧(MDA)	추가 아동양육크레딧(AVPF)	3자녀 이상 크레딧(MP)	양육 크레딧
지원 기준	연금가입자	연금가입자	자녀 1명 이상, 일정 소득 이하, 가족급여 수급자	의무가입 퇴직연금 가입자가 3자녀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연금관련 소득자 등 조건 충족 시
추가 가입 기간	자녀 1인당 3년 (이 기간 중 출산 시 중복 인정 않음)	자녀 1인당 2년(8쿼터)	자녀수에 따라 6개월~15년 (가족급여 수급기간)	연금액의 10% 추가 가산	자녀 출생 후 첫 4년 (이 기간 중 출산 시 중복 인정 않음)
인정 소득	전체가입자 평균소득	수급자의 생애평균소득	최저임금		세 가지 중 선택 ① 자녀 출산 이전 해의 소득과 현재 소득 사이의 차이 ② 65세 이하 전체 연금가입자의 평균 연금관련 소득의 75%와 현재 소득 사이의 차이 ③ 소득관련 기준액
재원	국고	보험료 기여금	복지재정펀드 (CNAF)	복지재정펀드 (CNAF)	중앙정부 및 부모보험

3. 중복급여 수급자의 연금급여 지급수준 확대: 「국민연금법」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급자가 노령연금 선택 시 유족연금액의 30%를 지급하는 현행 수준에서

- 유족연금액의 40%를 지급할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318억원
- 유족연금액의 50%를 지급할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635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복급여 수급자가 될 경우[1] 한 개의 연금을 선택해야 함

○ 노령연금 선택: 기존 수급하던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지급

○ 유족연금 선택: 노령연금 미지급

❑ 배우자 사망 등으로 노후생활 대비가 어려운 수급자의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이려면 중복급여의 지급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중복급여 수급자의 76%를 차지하는 여성수급자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액이 남성수급자에 비해 낮아, 중복급여 중 하나 선택 시 노후소득 감소 문제 발생

- 2018년 6월 중복급여 수급자 61,726명(남 14,752명, 여 46,974명)

박연서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55, mileend@nabo.go.kr)

1) 중복급여 수급자는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다가 배우자 등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이 발생한 경우 또는 유족연금을 수급하고 있다가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된 경우 발생 가능함

❑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중복급여 수급자의 급여 수준 향상을 위한 개정안 발의

○ 정부도 2018년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중복급여 수급자가 노령연금 선택 시 유족연금 지급률을 40%로 상향하는 개선방안 제시

나. 관련 법률안 등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2017. 4. 11.	중복급여 수급자가 노령연금 선택 시 유족연금 지급률을 50%로 상향

기타	제출자	제출일	주요내용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정부	2018. 12. 24.	중복급여 수급자가 노령연금 선택 시 유족연금 지급률을 40%로 상향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중복급여 수급자 수는 2013~2016년의 평균증가율 16.8% 적용

○ 중복급여 수급자의 유족연금액은 2018년도 1인당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상승 가정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유족연금의 40% 또는 50% 지급률 적용 시 연금급여액
- 현행 유족연금의 30% 지급률 적용 시 연금급여액

- 유족연금액은 2018년 6월 기준 월평균 207,420원(중복급여 수급자의 유족연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2019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상승 가정

3) 추가재정소요

○ 국민연금 중복급여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선택하여 유족연금의 일부만 수급하게 될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수준을 현행 30%에서 상향 조정할 경우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중복급여 수급자가 노령연금 선택 시 유족연금 지급률을 40%로 상향	318억원
시나리오 2	중복급여 수급자가 노령연금 선택 시 유족연금 지급률을 50%로 상향	635억원

- (시나리오 1) 중복급여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선택하여 유족연금의 일부인 40%를 지급할 경우, 연평균 318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 2) 중복급여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선택하여 유족연금의 일부인 50%를 지급할 경우, 연평균 635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4.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상향조정: 「기초연금법」

소득하위 70%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인 현행 253,750원에 대하여

- 2019년에 소득하위 20%인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7,141억원
- 2019년과 2021년에 각각 소득하위 20%인 노인과 소득하위 20~70%인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1조 9,374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4년에 도입된 제도임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자에게 2014년 월 최대 20만원(기준연금액)에서 시작하여 2019년에는 월 최대 253,750원 지급

❑ 그런데 저소득층 노인의 생계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상향하는 개정안 발의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

유희수 추계세제분석관 (02-788-4740, hsyoo@nabo.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2018. 7. 16.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소득하위 20~70%는 현행 유지)

주: 박광온의원안이 본회의 통과(2018.12.27.)되어 2019.4.1.부터 시행중임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만 65세 이상 연령별 인구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기준연금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

○ 2019년에 소득하위 20%인 자의 기준연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시나리오 1)와 2019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쳐 기준연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시나리오 2)[1]로 나누어 가정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 65세 이상 인구 × 대상자 비율 × (개정안에 따른 월 기초연금액 - 현행기준 유지 시 월 기초연금액) × 12월

1) 정부는 2019년에 소득하위 20%인 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21년에 소득하위 20~70%인 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함

3) 추가재정소요

○ 기준연금액 상향조정에 따른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상향조정 시기	상향조정 대상	
시나리오 1	2019년	소득하위 20%	7,141억원
시나리오 2	2019년 2021년	소득하위 20% 소득하위 20~70%	1조 9,374억원

- (시나리오 1) 2019년에 소득하위 20%인 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연평균 7,141억원(총 3조 5,703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 2) 만65세 이상 노인 중 2019년과 2021년에 각각 소득하위 20%인 자와 소득하위 20~70%인 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연평균 1조 9,374억원(총 9조 6,871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5.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아동수당법」

현행 아동수당(10만원) 지급기준 연령을 0~6세에서

- 0~8세 이하 아동으로 확대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1조 2,854억원
- 0~15세 이하 아동에게 단계적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15조 7,663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1], 경제적 · 사회적 부담으로 인하여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시행

❑ 지급대상은 아동수당 도입 당시에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소득기준을 삭제하고 적용연령도 확대

○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수준 이하인 0~5세 아동(2018년 9월) → 모든 0~5세 아동(2019년 1~8월) → 모든 0~6세 아동(2019년 9월)

○ 수당단가는 아동수당 도입 당시의 월 10만원을 향후에도 유지

이은미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27, eunmee@nabo.go.kr)

1) 아동수당은 주로 child allowance 또는 children's allowance로 표기됨. 다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게 국한하여 제공하는 이스라엘, 일본, 그리스의 경우에는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으로 부르기도 하며,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아동수당(child allowance)과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을 구분하여 제공함

❑ 6세 이상의 아동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의 연령 기준 및 월 지급액 상향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또는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수당 단가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맞추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 발의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2018. 9.21.	8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지급 (아동수당 단가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김승희의원	2018.11.23.	15세 이하 아동에게 단계적으로 월 30만원 아동수당 지급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연령기준 및 아동수당 월 지급변화에 따른 재정소요를 시나리오로 제시

○ 아동의 연령별 인구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2017년) 활용

○ 아동수당 단가에 적용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활용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 (연령별 지급 대상자수 × 월 지급금액 × 12월) - (현행제도 유지 시 재정소요)

- 지급대상자의 연령은 시나리오에 따라 0~15세 적용, 월 지급금액은 시나리오에 따라 월 10~30만원(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포함) 적용
- 현형 제도 유지 시 재정소요는 2019년 9월부터 실시하는 0~6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재정소요액임

3) 추가재정소요

○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및 단가 조정에 따른 2020 ~ 2024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대상자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연령	지급액		
시나리오 1	0~8세	월 10만원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370만명('20년) ~ 330만명('24년)	1조 2,854억원
시나리오 2	0~15세	월 30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으로 단계적 반영)	599만명('20년) ~ 659만명('24년)	15조 7,663억원

- (시나리오 1) 0~8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평균 1조 2,854억원(총 6조 4,268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 2) 0~15세 아동에 대해, 단계적으로[2]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평균 15조 7,663억원(총 78조 8,314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2) 단계적으로 적용한 방식은 2020년에는 12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 13세 아동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2021년에는 12세 이하 아동에게 월 20만원, 13세 및 14세 아동에게 월 25만원, 2022년부터는 15세 이하 아동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함

6. 미등록 장애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록이 어려운 장애 아동에게 의료비 지원을 도입하면서

- 0~5세 이하 미등록 장애 아동 50%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할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5억 2,700만원
- 0~12세 이하 미등록 장애 아동 50%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할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9억 1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현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장애인의 범위는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등록장애인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1]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임

○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의 전액 또는 일부임(식대 및 약제비는 미지원)

❑ 그런데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예견될지라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판정 시기의 제한 등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지 못한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개정안 발의

이은미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27, eunmee@nabo.go.kr)

1)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은 2018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25만 9,601원) 이하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임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2018. 6. 25.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의료비 지원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의료비 지원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미등록 장애 아동의 50%에게 지원[2]하는 것으로 가정

○ 1인당 의료비 지원은 1인당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 (미등록 장애 아동 수[3] × 50%) × 1인당 본인부담금

- 미등록 장애 아동 수는 6세 미만 아동(시나리오 1) 및 13세 미만 아동(시나리오 2) 수에 장애 출현율(0.39%) 및 장애 등록률(81.6%)을 적용하여[4] 산출된 등록 장애인 수를 차감하여 산출

---

2) 의료비를 지원받는 장애인의 범위는 「의료급여법」(등록 장애인 중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국민건강보험법」(등록장애인 중에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 규정하고 있음. 본 추계에서는 의료급여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40%) 등을 고려하여 미등록 장애 아동의 50%를 지원 대상으로 가정함

3) 미등록 장애 아동 수는 장애 출현 아동 수에 장애 등록률을 곱하여 산출하고, 장애 출현 아동 수는 아동 수에 장애 출현율을 곱하여 산출함

4) 장애 출현율과 장애 등록률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참고함

- 1인당 본인부담금 산출은 1인당 진료비에 1인당 본인부담 비중(0~5세: 입원 5%, 외래 21.8%, 약국 16.2%, 0~12세: 입원 5%, 외래 29.1%, 약국 21.3%)을 각각 곱한 후 합하여 산출

3) 추가재정소요

○ 장애인 미등록 장애 아동 50%에 대하여 의료비(1인당 본인부담금)를 지원할 경우 2020 ~ 2024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대상자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연령	1인당 본인부담금(평균)		
시나리오 1	0~5세	663,338원	838명('20년) ~ 771명('24년)	5억 2,700만원
시나리오 2	0~12세	472,580원	1,987명('20년)~ 1,828명('24년)	9억 100만원

- (시나리오 1) 0~5세 이하 장애인 미등록 장애 아동 50%에 대해 의료비(1인당 본인부담금)를 지원할 경우, 연평균 5억 2,700만원(총 26억 3,7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 2) 0~12세 이하 장애인 미등록 장애 아동 50%에 대해 의료비(1인당 본인부담금)를 지원할 경우, 연평균 9억 100만원(총 45억 5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7.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산정기준 명시화 및 사후정산제 도입: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산정기준을 현행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4%로 변경할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5,940억원,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6%로 변경할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1조 8,812억원
- 국고지원금이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과소 지원된 경우 2년 후 그 차이를 사후 정산할 경우(시나리오 3) 연평균 1조 8,407억원의 추가 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국가재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고(「국민건강보험법」)에서, 6%에 상당하는 금액은 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원[1]하고 있음

❑ 그런데 '예상수입액'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어렵고, '상당하는 금액'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존재함

유희수 추계세제분석관 (02-788-4740, hsyoo@nabo.go.kr)

1)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의미함. 따라서, '재정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보험재정 자체는 국가재정이 아님. 다만,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 및 건강증진기금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동 금액을 추계대상으로 함

❑ 이에 국고지원금 산정기준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으로 변경하거나 사후 정산하도록 하는 한편, 한시규정(2022년 12월 31일까지)으로 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한을 폐지하는 개정안 발의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2018. 12. 3.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의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 정부지원 기한 폐지
	윤일규의원	2018. 8. 30.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의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
	기동민의원	2017. 9. 27.	2년 후 사후정산, 정부지원 기한 폐지
	김광수의원[1]	2016. 10. 25.	
	양승조의원[1]	2016. 7. 7.	
	윤소하의원[1]	2016. 6. 30.	

주: 1) 동 법률안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006471호)에 반영되어 폐기되었으나, 대안의 내용에 사후정산은 반영되지 않아 별도 제시함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4%를 지원하는 근거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만 고려

※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지원하는 근거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은 고려하지 않음

○ 정부지원 기한이 폐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의 기준 변경 및 사후정산 도입 여부에 따라 시나리오 구성

- 확정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정부부담기준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 16%에 대하여 시나리오 각각 구성
- 사후정산이란 국고지원금이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과소 지원된 경우 2년 후에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4% 또는 16%에 해당하는 금액(제도 변경 시 재정소요)} -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현행제도 유지 시 재정소요)}

-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은 건강보험료 수입액에 실제 수입액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을 곱하여 산출하며, 이 때 실제 보험료 수입액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은 최근 3년간(2015~2017년) 평균인 11.14% 적용[2)]

2)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로 산정하여 지원한 금액을 사후적으로 재계산하면 실제 해당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미치지 못하였음. 본 추계에서는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산정된 국가 지원금은 최근 3년간(2015~2017년) 실제 수입액 대비 국가 지원금 비율인 11.14% 수준으로 가정함

- 건강보험료 수입액은 건강보험료 납부자 수에 1인당 보수월액 추계액과 납부개월 수(12개월), 해당연도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추계하며, 이 때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2년까지는 매년 3.49%씩, 2023년부터는 3.2%씩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3)]

○ 사후정산 시 추가재정소요는 2년 전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제도 변경 시 재정소요)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현행제도 유지 시 재정소요)을 차감하여 산정

3) 추가재정소요

○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기한을 폐지하되,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예산편성기준 변경 또는 사후정산에 따른 2020 ~ 2024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정부지원 기한 폐지, 정부지원금 산정기준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4%로 변경	5,940억원
시나리오 2	정부지원 기한 폐지, 정부지원금 산정기준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6%로 변경	1조 8,812억원
시나리오 3	2년 후 사후정산, 정부지원 기한 폐지	1조 8,407억원

주: 예산편성기준 변경 및 사후정산이 2020년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함

3) 보건복지부는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지난 10년간(2007~2016년) 평균 수준인 3.2%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2018년 2.04%, 2019년은 3.49%이며, 2022년까지 매년 3.49% 인상할 경우 2018~2022년까지 평균 인상률이 3.2%가 됨. 따라서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49%로 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종료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2%씩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함

- (시나리오 1) 정부지원금 산정기준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4%로 변경할 경우, 연평균 5,940억원(총 2조 9,699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 2) 정부지원금 산정기준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6%로 변경할 경우, 연평균 1조 8,812억원(총 9조 4,059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 3)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과소 지원된 국고지원금을 2년 후 사후정산할 경우, 연평균 1조 8,407억원(총 9조 2,036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II 산업 · 농업 · 국토 · 교통 분야

1. 에너지 소외계층 냉방지원 확대: 「에너지법」

폭염 등의 하절기에 에너지 소외계층이 적정수준의 냉방을 유지하도록

- 냉방 바우처를 지급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77억원
- 냉방기기를 지급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247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현행법에서는 에너지 소외계층이 적정 수준의 난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2019년 예산 937억원)과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2019년 예산 698억원) 시행 중

❑ 하절기 폭염 등에도 에너지 소외계층이 최소한의 냉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고, 냉방기기 보급을 지원하는 「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문지은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45, mtsophia@nabo.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2018. 10. 4.	에너지 바우처 '냉방' 확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고효율 냉방장치 보급
	서형수의원	2018. 11. 20.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확대 (저소득층 냉방기기 보급)
	이학재의원	2018. 11. 30.	에너지 소외계층 냉방기기 지급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난방에서 냉방까지 확대할 경우, 지원대상은 현행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과 동일하고, 에너지 바우처 수급률도 동일한 것으로 가정[1)]
- ○ 냉방바우처 지급기간은 하절기 3개월로 하며, 지원대상 가구의 전기요금 할인금액을 제외한 실부담액(월 3,710원)을 지원단가로 가정
- ○ 에너지 냉방기기 보급 대상자는 현행 사업대상에 냉방기기(에어컨) 미보유 가구 수 비중을 곱하여 추정, 냉방장치 단가는 20만원 적용
- ○ '냉방기기가 없는 가구 비율'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료인 에너지경제연구원(2017)의 「2017년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 월 200만원 이하 소득가구 냉방기기 보급비율 0.55대를 활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 ·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포함한 가구에 대하여 동절기 3개월간 난방에 대한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임

2) 추계 방법

○ (시나리오 1: 냉방바우처 지원)

추가재정소요 = 바우처 지급대상 전망치 × 바우처 수급률 × 지원단가

- 지원단가는 2017년 기준 지원대상 전기요금 할인 후 평균 초과부담액 11,130원(하절기 월 평균 지원대상 전기요금 실부담액 3,710원/월)에 국회 예산정책처 물가상승률을 적용

○ (시나리오 2: 냉방기기 지급)

추가재정소요 = 지원대상전망치 × 저소득층 냉방기기 미보유 가구 비율 × 냉방기기 단가

-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사업 대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전망치에,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의 냉방기기 미보유 가구 비율을 적용하며, 지원단가는 20만원으로 가정

3) 추가재정소요

○ 에너지 바우처사업을 난방에서 냉방까지 확대하고,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냉방기기를 지급함에 따른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의 하절기 전기요금(실부담액) 3개월 지급	77억원
시나리오 2	에너지 소외계층 중 에어컨이 없는 가구에 소형 에어컨 설치비용 지급	247억원

- (시나리오 1) 에너지 바우처를 냉방으로 확대할 경우, 연평균 77억원(총 383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 2)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해 에어컨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연평균 247억원(총 1,235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라. 참고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에너지바우처(냉방) 사업예산 40억원 편성

❑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냉방기기 보급 60억원 편성(3만 가구 × 냉방기기보조 20만원)

2. 폭염 및 혹한 등 재난 발생 월의 전기요금 지원: 「전기사업법」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의 전기요금 미납요금을 지원하는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확대하여

- 폭염 및 한파 재난 발생 월의 전기요금을 100분의 30 이상 감면할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952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 폭염 재난 발생 월의 전기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하고 이를 전력기반기금으로 지원할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378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및 2,762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한국전력공사는 사회적 배려대상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의 부담을 경감하고, 긴급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전기요금할인제도를 시행 중[1)]

○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 장애인 등의 주택용 누진제 부담완화 및 3개월 이상 전기요금 미납자의 미납요금을 지원하는 전기요금 긴급지원 사업

❑ 최근 들어 폭염 및 혹한의 발생빈도가 잦아져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폭염 및 혹한이 발생한 달에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해당 '월'의 전기요금을 정부가 100분의 30 이상 지원하거나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문지은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45, mtsophia@nabo.go.kr)

1)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7조

○ 폭염 및 혹한 등 재난이 발생한 '월'의 전기요금을 100분의 30 이상 감면 혹은 지원

○ 한국전력공사(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기요금할인제도의 주체를 정부로 변경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화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2018. 9. 6.	혹한기 또는 혹서기 전기요금감면
	하태경의원	2018. 10. 4.	폭염 발생 시 전기요금의 100분의 30 이상 감면하고, 감면분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
	강효상의원	2018. 11. 20.	폭염 및 혹한 등 재난 발생 시 전기요금의 100분의 30 이상 감면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폭염, 혹한기, 혹서기 등의 정의는 ① 기상청의 최근 10년간 일평균 기온[2]과 ② 한국전력공사에서 집계한 월 전기사용량 최대인 해당 월(최근 실적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폭염 재난(혹서기포함)은 8월, 한파 재난(혹한기포함)[3]은 1~2월로 가정하며, 전기요금 감면규모는 100분의 30으로 가정

2) 일 최고기온이 33°C 이상인 날의 일수임
3) 최근 10년간 월평균 기온이 최저인 통계 및 한국전력공사의 동계전력사용량이 급증한 1월과 2월에 발생할 것으로 가정함

❑ 시나리오 1은 폭염 및 한파 발생 월의 전기요금 100분의 30을 감면함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

❑ 시나리오 2는 폭염 재난 발생 월의 전기요금 100분의 30을 감면하고, 감면분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2) 추계 방법

○ (시나리오 1) 재정수입감소(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 부가가치세)

- 재정수입감소(부담금) = 전기요금 감면액 × 부담금요율(3.7%)
- 재정수입감소(부가가치세) = 전기요금 감면액 × 부가가치세율(10%)

※ 전기요금 감면액 = 폭염혹한기 전력사용량 × 주택용 전기요금단가 × 감면율(30%)

○ (시나리오 2) 재정변동분 = 추가재정소요 - 재정수입 감소

*추가재정소요 = 전기요금 감면액
= 폭염기 전력사용량 × 주택용전기요금단가 × 감면율(30%)

-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는 일반납입자, 전기요금 복지할인 감면자로 구분

**재정수입감소 =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 부가가치세)

- 재정수입감소(부담금) = 전기요금 감면액 × 부담금요율(3.7%)
- 재정수입감소(부가가치세) = 전기요금 감면액 × 부가가치세율(10%)

3) 재정변동

○ 폭염 및 한파 발생 월의 전기요금 100분의 30을 감면할 경우 2020~2024년까지 재정변동은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재정변동〉

구분	기준	재정변동의 재원	연평균 재정변동
시나리오 1 (주택용전기요금 100분의 30 감면)	폭염(혹서)기 전기요금감면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	378억원
	한파(혹한)기 전기요금감면		573억원
시나리오 2 (주택용전기요금 100분의 30 지원)	폭염(혹서)기 전기요금감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감면액 지원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증가)	2,762억원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	378억원

- (시나리오 1) 폭염 및 한파 재난 발생 월의 전기요금 100분의 30을 감면할 경우 2020~2024년까지 연평균 952억원의 재정수입(전력산업기반 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감소 예상
- (시나리오 2) 폭염 재난 발생 월의 전기요금 100분의 30을 감면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때 2020~2024년까지 연평균 378억원의 재정수입(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감소 및 2,762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3.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상인들이 납부한 공제료로 조성된 화재공제사업에 정부는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에서

-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료 50%를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614억원
-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료 100%를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1,227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공제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2019년 9억 9,000만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음

❑ 전통시장 화재의 경우 영세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므로, 전통시장 화재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

문지은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45, mtsophia@nabo.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2018. 7. 25.	전통시장 화재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가입대상자는 전통시장 점포수 대비 영업점포 비율(90.1%)을 적용

○ 지원대상자 추정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6년 전통시장 · 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2018.2)를 바탕으로 현행 가입자의 재가입률, 신규가입희망률 등을 적용

○ 민간 화재보험의 보험료[1]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다고 가정하며, 화재보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비율은 자연재난의 정책성 보험 사례[2]를 참고하여 평균 50%로 가정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 화재보험 가입 대상자 수 × 가입 점포당 보험료 × 정부지원 비율

1) 2016년 기준 화재보험 가입한 전통시장 점포의 월평균 보험료는 83,100원(연 997,200원)임
2) 자연재난에 대한 정책성 보험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업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를 50% 지원, 국가안전처의 풍수해보험은 55~92% 수준(보상률에 따라 달라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 가축재해보험도 보험료의 50% 등으로 나타남.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역시 국고 50% 지원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부지원은 보통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전통시장 영업점포수 증가세를 반영하여 가입대상 점포수를 추정하고, 화재보험 가입자 수 전망은 현행 민간보험 가입자(재가입), 정부 지원 시 가입예상자(신규가입)로 구분하여 추산하여 합산하며, 가입 점포당 보험료는 연간 997,200원으로 하고 추계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 정부지원비율 50%(시나리오 1), 100%(시나리오 2)

3) 추가재정소요

○ 전통시장 화재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혹은 전부 지급할 경우 2020 ~ 2024년까지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50% 지원	민간화재보험 가입률(재가입)	614억원
		정부 지원 시 가입률(신규)	
시나리오 2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100% 지원	민간화재보험 가입률(재가입)	1,227억원
		정부 지원 시 가입률(신규)	

- (시나리오 1) 전통시장 화재보험료를 정부가 50% 지원하는 경우, 연평균 614억원(총 3,068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 2) 전통시장 화재보험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경우, 연평균 1,227억원(총 6,136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4. 쌀 목표가격 인상: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업소득 보전과 관련된 쌀 목표가격을 현행 2,352원/㎏(188,192원/80㎏)에서

- 2018년산부터 2022년산까지 3,065원/㎏(245,200원/80㎏)으로 인상하는 경우 연평균 1조 1,127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변동직접지불금은 농업인 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

○ 목표가격[1]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불금 지급단가[2]를 빼고 남은 금액

❑ 농업인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쌀 목표가격을 1㎏당 현행 2,352원에서 3,065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

이택균 추계세제분석관 (02-788-3746, 69potato@nabo.go.kr)

1) 농업인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가격임
2) 단위면적(ha)당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2012년산 70만원에서부터 2015년산 1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당시 인상계획에 따른 목표치에 도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동일한 수준인 100만원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2018. 11. 12.	쌀 목표가격을 1㎏ 당 3,065원으로 인상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변동직불금은 WTO 농업협정상 감축대상보조 지급한도(연간 1조 4,900억원)내로 실제 지급가능 금액이 제한[3]됨을 고려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 개정안에 따른 변동직불금 규모 - 현행법에 따른 변동직불금 규모

- 변동직불금 규모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 단위생산량 × 등록농지면적
- 변동직불금은 WTO 농업협정상 감축대상보조 지급한도(연간 1조 4,900억원) 내로 실제 지급가능 금액이 제한되므로 연간 규모가 이를 넘는 경우에는 1조 4,900억원을 기준으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변동직불금지급단가
  = (목표가격 - 쌀 수확기 평균가격) × 0.85 - 고정직불금지급단가

3) 1994년 우리나라의 감축대상보조 지급한도는 2조 2,595억원이었으며, 연도별 이행계획에 따라 2004년 1조 4,900억원까지 감축됨. 해당 금액은 추가적인 DDA 협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나, 2018년 현재까지 합의된 변경사항은 없음. 본 추계에서는 WTO 농업협정상 감축대상보조 지급한도는 추계대상기간 동안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의 목표가격: 245,200원/80kg

* 현행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산된 2018년~2022년산 쌀 목표가격[4]: 188,192원/80kg

* 쌀 수확기 평균가격[5]: 2018년의 경우 동 년도 평균가격(193,448원)을 반영하고, 2019년 이후는 최근 5개년(2014년~2018년산) 쌀 수확기 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값(158,924원/80kg)으로 가정

* 고정직불금지급단가 14,993원/80kg = 단위면적(ha)당 고정직불금 단가(100만원) ÷ 단위생산량(66.7가마/ha)

〈개정안에 따른 변동직불금 규모〉

생산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변동직불금지급단가 [원/80kg(1가마)] (A)	28,996	58,342	58,342	58,342	58,342
단위생산량(가마) (B)	66.7				
등록농지면적(ha) (C)	671,858	660,100	648,548	637,198	626,047
변동직불금규모(억원) (A×B×C)	**12,994**	25,687	25,238	24,796	24,362
WTO 농업협정상 감축대상보조 지급한도 (변동직불금 지급 가능액)	14,900	**14,900**	**14,900**	**14,900**	**14,9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개정이 필요하나, 본 추계에서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현행 목표가격으로 가정함

5)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현황(2010~2018년산)〉

생산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가격(원)	138,231	166,308	173,779	174,707	166,198	150,659	129,711	154,603	193,448

〈현행법에 따른 변동직불금 규모〉

생산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변동직불금지급단가 [원/80kg(1가마)] (A)	0	9,885	9,885	9,885	9,885
단위생산량(가마) (B)	66.7				
등록농지면적(ha) (C)	671,858	660,100	648,548	637,198	626,047
변동직불금 규모(억원) (A×B×C)	0	4,352	4,276	4,201	4,12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가재정소요

○ 목표가격 인상에 따른 2019 ~ 2023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쌀 목표가격을 1㎏ 당 3,065원으로 인상	1조 1,127억원

- (시나리오) 쌀 목표가격을 1㎏ 당 3,065원으로 인상할 경우, 연평균 1조 1,127억원(총 5조 5,637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5. 농어업재해보험료 정부 지원율 인상: 「농어업재해보험법」

국가가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 70%로 인상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1,614억원
- 60%로 인상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1,319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작물의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보험임

❑ 현재 국가의 지원율은 50%이며 농업분야 57개, 축산분야 16개, 어업분야 28개 품목별로 운영하고 있음

❑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국비 지원율을 상향하는 개정안 발의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2018. 6. 21.	농어업재해보험의 100분의 70 이상을 정부가 지원

이택균 추계세제분석관 (02-788-3746, 69potato@nabo.go.kr)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정부의 현행 보험료 지원율 50%를 60~70%로 상향한다고 가정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 재해보험별 2018년 전체보험료 × 10~20% × 연평균 가입 증가율

3) 추가재정소요

○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금 상향에 따른 2020 ~ 2024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농어업재해보험료의 70% 지원	1,614억원
시나리오 2	농어업재해보험료의 60% 지원	1,319억원

- (시나리오 1) 농어업재해보험료의 70%를 지원할 경우, 연평균 1,614억원(총 8,062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 2) 농어업재해보험료의 60%를 지원할 경우, 연평균 1,319억원(총 6,593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6.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교통안전법」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 한해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되,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현행에서

- 모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193억원
-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60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의 도로에 대해서는 공공도로에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미적용

○ 공동주택은 교통안전 비전문가인 운영자(입주민 대표, 관리사무소)가 도로를 유지 · 관리하여 적절한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

○ 참고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2년부터 일부 아파트 단지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점검 실시

성선애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50, sasung@nabo.go.kr)

-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86개 아파트 단지에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실시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8년도 기준으로 교통안전점검 120개 아파트 단지 중 25개 아파트(20.8%)에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설치 등의 개선안 권고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2018. 1. 26.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동주택 및 접속구간 등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공동주택 및 접속구간의 교통시설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강훈식의원	2018. 12. 27.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단지 안의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안의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지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2018. 6. 2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2018. 11.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공동주택 단지의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 1)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 2)로 가정

○ 전국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추계기간 5년 동안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실태점검 대상 공동주택 단지 수는 15,730개(2018년 12월 기준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수 16,116개에 이미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이 완료된 386개 공동주택 단지 제외)

○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비용은 공동주택 단지 1개당 400만원(2018년 기준)으로 가정하고,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

○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1개 공동주택 단지당 1,731만원(2019년도 기준)으로 가정하고,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대상의 20.8%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 실태점검 대상 공동주택 단지 수 × 단지 1개당 점검비용

-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 수 × 단지 1개당 교통안전시설 설치 비용 × 보조율 50%

3) 추가재정소요

○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과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따른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공동주택 단지의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15,730개)과 공동주택 단지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3,272개)	193억원
시나리오 2	공동주택 단지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3,272개)	60억원

- (시나리오 1) 공동주택 단지의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과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경우, 연평균 193억원(총 966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 2) 공동주택 단지의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경우, 연평균 60억원(총 300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Ⅲ 교육 · 문화 · 여성 · 가족 분야

1. 고교무상교육: 「초 · 중등교육법」

현재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실시되는 무상교육을 고등학교로 확대하면서

- 고등학교에 대해 전면적인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1조 5,998억원
- 고등학교에 대해 입학금 및 교과서용 도서구입비, 학교운영비, 수업료(학년별)를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1조 2,759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현재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전면 무상교육 또는 단계적 무상교육)하는 개정안 발의

손명동 추계세제분석관 (02-788-3739, tundra@nabo.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2017. 6. 2.	중등교육 무상교육 실시
	박홍근의원	2017. 6. 21.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유은혜의원	2017. 7. 6.	중등교육 무상교육 실시
	채이배의원	2017. 7. 27.	고교 무상교육 실시(급식비 포함)
	노회찬의원	2017. 7. 27.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서영교의원	2018. 8. 30.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2017. 7. 27.	중등교육 무상교육 실시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지원항목은 입학금, 교과용도서구입비, 학교운영비, 수업료로 하고, 추계기간 동안의 전체 고등학생 수는 2016년 기준 학년별 현황을 바탕으로 취학률과 진학률을 고려

- 2016년 기준 전체 고등학생 중 기 지원자 비율은 연도별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입학금과 수업료 단가는 2017년 각 시 · 도 조례[1]로 정한 지역별 · 학교 종류별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에 각 지역별 학생 수를 곱하여 가중한 평균 금액 적용

- 2013~2016년 교육비 연평균 증가율이 2017년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와 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의 분기액 및 연액을 정하고 있음

○ 학교운영지원비는 각 학교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6년 각 시 · 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평균 지원금액에 2017년 이후에 교육비 연평균증가율을 적용

○ 교과용 도서 구입비 단가는 2018년 정부의 교육급여 예산 단가를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 (입학금 + 교과용도서구입비 + 학교운영비 + 수업료) × 학생 수

○ 전면적 고교무상교육은 입학금, 교과용도서구입비, 학교운영비, 수업료를 시행 첫해부터 모두 면제하는 것으로 하고, 단계적 무상교육은 학년별로 입학금(해당 연도 1학년 대상), 교과용도서구입비, 학교운영비, 수업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가정

3) 추가재정소요

○ 고교무상교육의 전면적 또는 연차적 실시에 따른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전면적 고교무상교육 실시	1조 5,998억원
시나리오 2	단계적 고교무상교육 실시	1조 2,759억원

- (시나리오 1)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입학금 및 교과서용 도서구입비, 학교운영비, 수업료를 전부 면제하는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연평균 1조 5,998억원(총 7조 9,990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 2)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연차별로 입학금 및 교과서용 도서구입비, 학교운영비, 수업료(학년별)를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연평균 1조 2,759억원(총 6조 3,795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2. 보건교사 의무배치: 「학교보건법」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가 배치되는 현 상황에서

- 고등학교 이하 모든 학교에 1인의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학생 수 600명 이상 학교에는 2인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되, 보건교사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20%씩 연차적으로 충원 · 배치하는 경우 연평균 3,304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현행법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되,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건교사 배치율 실태는 80% 이하로 나타남

❑ 이에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2017. 1. 6.	보건교사 의무배치
	박인숙의원	2018. 4. 10.	보건교사 의무배치 (일정 규모 학교 2인이상 배치)
	신동근의원	2018. 12. 3.	보건교사 의무배치 (일정 규모 학교 2인 배치)

손명동 추계세제분석관 (02-788-3739, tundra@nabo.go.kr)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보건교사 배치 대상 학교를 유치원과 대학을 제외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로 한정

○ 보건교사 2인을 배치하는 학교 규모는 학생 수 기준 600명으로 전제

- 학생 수 600명을 초과하는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에는 보건교사 2인을 배치하며, 학생 수 600명 이하의 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을 배치

○ 보건교사는 수급상황 및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20%씩 충원하여 2024년에 개정안에 따른 보건교사 배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 충원 보건교사 수 × (인건비 + 자산취득비 + 기본경비)

○ 학생 수 600명 초과 학교 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감소하는 반면, 학생 수 600명 이하 학교 수는 증가하는 추이를 반영

3) 추가재정소요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데 따른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각급 학교에 보건교사 1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되, 학생 수 600명 이상 학교에는 2인 배치	3,304억원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1인의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학생 수 600명 이상의 학교에는 2인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되, 예산 및 보건교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20%씩 연차적으로 배치하는 경우 연평균 3,304억원(총 1조 6,518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3. 병설유치원 전담 조리사 등의 배치: 「유아교육법」

현재 거의 배치되어 있지 않은 병설유치원 전담 조리사를

- 모든 병설유치원에 배치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1,411억원
- 일부 병설유치원에 전담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배치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130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은 원아 수가 적어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조리사 등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음

○ 현행법은 유치원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병설유치원 전담 조리사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급식을 실시하는 병설유치원 중 대부분(2017년 기준 99%)이 초등학교 직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유아에게 적합한 별도의 식단 구성이나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 등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유아에게 적합한 식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병설유치원에 조리사 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

유희수 추계세제분석관 (02-788-4740, hsyoo@nabo.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2017. 12. 20.	병설유치원 전담 조리사 및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배치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급식을 실시하는 모든 병설유치원에 조리사를 1명씩 두는 것으로 가정(시나리오 1)

○ 급식을 실시하는 병설유치원 중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1]에 한하여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1명씩 두되, 신규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비중은 각각 50%[2]으로 가정(시나리오 2)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 신규인력 수 × 신규인력 1인당 인건비

3) 추가재정소요

○ 병설유치원 전담 조리사 등의 배치에 따른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1)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은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 영양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병설유치원에도 전담 영양교사 등의 배치기준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함

2)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영양교사가 4,903명(48.5%), 영양사가 5,216명(51.6%) 배치되어 있음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배치인력 종류	총 배치인력 수	
시나리오 1	조리사	4,268명	1,411억원
시나리오 2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315명	130억원

- (시나리오 1) 모든 병설유치원에 전담 조리사를 배치하는 경우, 연평균 1,411억원(총 7,056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 2) 일부 병설유치원에 전담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배치하는 경우, 연평균 130억원(총 650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4.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예술인 복지법」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을 적용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면서

- 프리랜서 예술인 월평균보수를 월 73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33억원
- 월평균보수를 월 91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41억원
- 월평균보수를 월 165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시나리오 3) 연평균 72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현행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다수가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며 단속적계약을 기반으로 소득을 얻고 있음. 따라서 그 계약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종속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

여은구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73, cecil@nabo.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2018. 12. 6.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예술인,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범위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완료자로 가정

○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요율(사업주 0.75%+예술인 0.325%=1.075%)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 예술인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지원
= 대상자 수 × 월평균보수 × 지급기간 × 지원보험료율

3) 추가재정소요

○ 예술인에게 「고용보험법」을 적용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따른 2020 ~ 2024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예술인에게 「고용보험법」 적용 시 월평균보수를 73만원으로 가정	33억원
시나리오 2	예술인에게 「고용보험법」 적용 시 월평균보수를 91만원으로 가정	41억원
시나리오 3	예술인에게 「고용보험법」 적용 시 월평균보수를 165만원으로 가정	72억원

- (시나리오 1)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프리랜서 예술인의 월평균 보수를 73만원(2018년 예술분야 종사 실태조사 예술인의 예술활동 월평균 수입)으로 가정하면, 연평균 33억원(총 164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 2) 프리랜서 예술인의 월평균 보수를 91만원(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상한액)으로 가정하면, 연평균 41억원(총 206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 3) 프리랜서 예술인의 월평균 보수를 165만원(고용노동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1]"의 고용보험 보험료지원금 2019년 월평균보수 기준)으로 가정하면, 연평균 72억원(총 361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1)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5. 손자녀돌보미 돌봄수당 지급: 「아이돌봄 지원법」

조부모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 손자녀돌봄수당 월 20만원을 9개월간 지급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524억원
- 손자녀돌봄수당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급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670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여성가족부는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아이돌보미 수급 부족 등으로 제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의 맞벌이 가정이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하는 경우 아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조부모에게 일정한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개정안 발의

여은구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73, cecil@nabo.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2018. 11. 27.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아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한 돌봄수당을 지급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양육수당 대상자였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가 개정안에 따라 아이돌봄수당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양육수당과 별개로 손자녀돌봄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손자녀 돌보미수 추정에는 보건복지부의 「2015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의 영유아 양육특성 중 영유아가구에서 (외)조부모가 돌보는 비중 12%, 영유아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비율 79%를 양육수당 대상자수에 적용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 손자녀돌보미 교육이수 + 손자녀돌보미 자격등록 + 손자녀돌보미 돌봄수당

- 손자녀돌보미 교육이수 = 손자녀돌보미 수 × 교육비 단가[1)]
- 손자녀돌보미 자격등록 = 서비스기관 인력 충원 = 신규충원 인력 × 월급여[2)] × 지원기간

1) 2019년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사업의 예산 기준 양성교육비 단가 21만원(1회)을 가정함

- 손자녀돌보미 돌봄수당 = 손자녀돌보미 수 × 돌봄수당[3] × 지원기간

3) 추가재정소요

○ 손자녀돌보미에 대하여 교육이수, 관리·감독 실시, 돌봄수당을 지급하는데 따른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돌봄수당 월 20만원, 9개월 지급	524억원
시나리오 2	돌봄수당 월 20만원, 12개월 지급	670억원

- (시나리오 1) 손자녀돌보미에 대하여 돌봄수당을 월 20만원, 9개월간(서초구, 광주광역시 손자녀돌보미 사업의 평균 지원기간으로 가정) 지급하는 경우 연평균 524억원(총 2,620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4]
- (시나리오 2) 손자녀돌보미에 대하여 돌봄수당을 월 20만원, 12개월간(가정양육수당 사업의 지원기간과 동일) 지급하는 경우 연평균 670억원(총 3,350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5]

2) 2019년 '아이돌봄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사업의 예산 기준 전담인력 월급여 182만원을 가정함
3) 2018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및 광주광역시 손자녀돌보미 사업의 지원단가 월 20만원을 가정함
4) 손자녀돌보미 교육이수는 연평균 16억원, 손자녀돌보미 자격등록은 연평균 70억원, 손자녀돌보미 돌봄수당은 연평균 437억원임
5) 손자녀돌보미 교육이수는 연평균 16억원, 손자녀돌보미 자격등록은 연평균 70억원, 손자녀돌보미 돌봄수당은 연평균 584억원임

Ⅳ 환경 · 노동 분야

1.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기준임금 변경: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출산전후휴가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기준임금을 현행 통상임금에서

- 평균임금(통상임금의 1.18배 수준 가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연평균 537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고용노동부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상임금[1]에 상당하는 금액(출산전후휴가 급여)을 지급하고 있음(2019년 기준 고용보험기금에 2,603억 9,400만원 예산 편성).

❑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기준임금을 통상임금에서 평균임금[2]으로 변경하는 개정안 발의

윤주철 추계세제분석관 (02-788-3737, yjc@nabo.go.kr)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2)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2019. 2. 12.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기준임금을 통상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변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자 수는 출생아 수 전망치의 일정 비율로 추정하며, 최근 출생아 수 감소를 고려하여 출생아 수 전망치는 통계청의 저위 기준 적용

- 수급자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3] 종사자의 비중은 55.3%, 대규모기업 종사자의 비중은 44.7%(2018년 기준)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기준임금을 통상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변경할 경우 지원단가는 현행 수준보다 평균적으로 1.18배 증가한다고 가정[4]

3)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의 구분은 업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제조업의 경우(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제외) 500명 이하임(「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평균적인 차이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자료에 근거함. 이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12,542원이며, 시간당 임금총액(평균임금)은 14,774원임. 즉, 통상임금 대비 평균임금의 비율은 1.18배 수준임(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자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2018.6.) 참고)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현행 지원단가는 월 하한액의 경우 월 최저임금액인 174.5만원이며 월 상한액은 180만원[5)]
- 2019년 고용보험기금 계획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종사자인 수급자의 평균 지원단가는 월 178만원, 대규모기업 종사자인 수급자는 월 179만원
- 월 하한액과 연동되어 있는 최저임금은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만큼 증가하며, 월 상한액은 월 하한액의 1.031배 수준(2019년 지원단가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종사자의 경우 3개월, 대규모기업 종사자는 1개월임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 × (평균임금 기준 월 지원단가 – 통상임금 기준 월 지원단가) × 지급기간

- 급여수급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종사자와 대규모기업 종사자로 구분

3) 추가재정소요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기준임금 변경에 따른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기준임금 변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의 1.18배 수준	537억원

5)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제정(2018.8.3.)으로 월 하한액이 인상되었으며(157.4만원→174.5만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개정(2018.12.31.)으로 월 상한액이 인상됨(160만원→180만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기준임금을 통상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변경할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의 1.18배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연평균 537억원(총 2,685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라. 참고사항

❑ 본 추계에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상대적 차이를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간당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평균 산출 방식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그 차이는 달라질 수 있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상대적 차이〉

(단위: 원)

평균 산출	사업장 규모	구 분	2015	2016	2017
중위수 (median)	1인 이상	통상임금(A)	10,097	10,982	11,512
		평균임금(B)	11,839	12,500	12,897
		B/A	1.17	1.14	1.12
	5인 이상	통상임금(A)	11,267	12,119	12,542
		평균임금(B)	13,554	14,205	14,774
		B/A	1.20	1.17	1.18
평균 (average)	1인 이상	통상임금(A)	13,193	14,038	14,765
		평균임금(B)	16,031	16,697	17,413
		B/A	1.22	1.19	1.18
	5인 이상	통상임금(A)	14,343	15,254	16,015
		평균임금(B)	17,907	18,536	19,312
		B/A	1.25	1.22	1.21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 인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부담기초액의 가산율을 현행 6%/20%/40%에서

- 12%/40%/80%로 2배 인상할 경우 연평균 1,221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미고용으로 인한 연평균 10억원의 추가재정 소요 예상

가. 개 요

❑ 장애인 의무고용률[1]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장애인 미고용 부담금[2])을 납부하여야 함(2019년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 5,997억원 수입 편성)

❑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하여 동 부담금을 인상하는 개정안 발의

○ 부담금이 인상될 경우, 부담금 수입 증가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 지출도 증가[3][4]

윤주철 추계세제분석관 (02-788-3737, yjc@nabo.go.kr)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1000분의 31

2) 현행법에 동 부담금의 명칭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되어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으로 함. 동 명칭의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권미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12986호)을 참고함

3) 이때 국가 등이 부담하는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수입으로 귀속되는데, 「의안의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2018. 11. 6.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 인상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이 인상될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현행 수준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다른데 가산율은 6/20/40%이며,[5] 개정안에 따른 가산율은 현행 수준의 2배로 가정[6]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입과 지출은 상계하여 추계하지 아니함

4) 현재 국가 등은 민간근로자 고용에 한하여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다만, 법 제32조의2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개정안에 따라 국가 등의 부담금 지출과 수입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다만, 본 추계에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을 추정하는 것이 어려워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5) 현행 부담기초액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2019년 기준으로 부담기초액은 1,048,000원으로 2019년 월 최저임금액(1,757,150원)의 60% 수준임. 동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률이 3/4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장애인 고용률이 낮을 경우 가산됨.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2호, 2019.1.1. 시행)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이 1/2 이상 3/4 미만인 경우는 6%를 가산하며, 장애인 고용률이 1/4 이상 1/2 미만인 경우는 20%, 장애인 고용률이 1/4 미만인 경우는 40%를 가산함

6) 개정안은 부담기초액의 가산 범위를 현행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부담기초액"으로 확대하고 있음

- 다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의 월 부담기초액은 현재 월 최저임금액이나, 개정안에 따라 월 최저임금액의 1.5배로 가정
- 부담기초액과 연동되어 있는 최저임금은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부담금 납부총액은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으로 하며, 월 부담금은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에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을 곱하여 산출[7)]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 지출 증가는 개정안에 따른 부담금 수입 증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부담금이 전체 부담금에서 차지하는 비율'(0.8%, 과거 3년 평균)을 곱하여 산출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고용의무 미달인원 × (개정안의 월 부담기초액 - 현행 월 부담기초액) × 부과월수

- 장애인 고용률 구간은 장애인 고용률 3/4 이상, 1/2 이상 3/4 미만, 1/4 이상 1/2 미만, 1/4 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

3) 재정수입 증감 및 추가재정소요

○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의 인상에 따른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 및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7) 이때 부담금 감면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산정금액에 조정계수(0.96)를 곱함. 동 계수는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기금운용계획」 기준이며,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함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 및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 인상	현행 부담기초액 가산율 2배	수입증가	1,221억원
		지출증가	10억원

-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을 인상할 경우 연평균 1,221억원(총 6,106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 부담금이 인상될 경우, 부담금 수입 증가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으로 인한 연평균 10억원(총 48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라. 참고사항

❑ 본 추계의 장애인 고용률 구간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인원(월평균)은 다음과 같음

〈장애인 고용률 구간별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인원(2019년 예산 기준)〉

(단위: 명)

장애인 고용률	3/4이상	3/4~1/2	1/2~1/4	1/4미만	0	합 계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인원(월평균)	5,627	13,229	18,086	6,340	2,913	46,195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대상 사업장 확대: 「대기환경보전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미설치 배출시설에 대해
- 방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 연평균 640.8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면제하도록 규정

- 2016년말 기준으로 전국 5만 7,500개 사업장 가운데 28.8%인 1만 6,532개 사업장이 동 규정에 근거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

❑ 면제시설의 경우 대기오염 방지시설 노후화 및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존재

❑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예외 없이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대기오염배출시설도 동 개정안 적용

이주호 추계세제분석관 (02-788-3735, progress@nabo.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2017. 11. 17.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조항을 삭제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예외 없이 설치하도록 의무화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대기오염배출시설 중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85개 배출시설(1종 54개, 2종 8개, 3종 23개)을 대상[1)]

○ 기존 16가지 대기오염방지시설 종류[2)]를 대표적인 4가지 유형, 즉 ① 입자상물질(먼지 등) 저감, ② 가스상물질 질소산화물(NOx) 저감, ③ 가스상물질

---

1) 국립환경과학원의 「2017 대기배출원 조사」를 바탕으로 1~3종 대기오염방지시설 면제시설 수를 산출함. 1~3종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발생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의3])
-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
-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

2) 현행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따른 구분은 16가지이며, 대기배출관리시스템(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SEMS)에서는 이를 35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대기오염방지시설(법 시행규칙 제6조 관련)〉

1. 중력집진시설	2. 관성력집진시설	3. 원심력집진시설	4. 세정집진시설
5. 여과집진시설	6. 전기집진시설	7. 음파집진시설	8. 흡수에 의한 시설
9. 흡착에 의한 시설	10.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11.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12. 응축에 의한 시설	13.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14.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15.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16. 위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시설과 같은 방지효율 또는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비고: 방지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덕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 기구류(예비용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함

황산화물(SOx) 저감, ④ 축열식연소장치(휘발성물질(VOCs) 등) 저감시설로 단순화하여 재분류

-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합계 기준을 1종 사업장의 경우 100톤(또는 2,000N㎥/min), 2종 사업장의 경우 50톤(또는 1,000N㎥/min), 3종 사업장의 경우 15톤(또는 500N㎥/min) 규모인 것으로 가정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은 2020년 첫해에 일괄 소요되며, 운영비용(약품비, 연료비, 전력비 등)은 추계기간 동안 시설 규모별로 적용

- 다만, 기존 배출시설 가동인력이 방지시설을 함께 가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건비는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 종류별·규모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 운영비용

- 종류별 대기오염방지시설(4유형):
  ①입자상물질(먼지 등) 저감, ②가스상물질 질소산화물(NOx) 저감, ③가스상물질 황산화물(SOx) 저감, ④축열식연소장치(휘발성물질(VOCs)등)
- 규모별 대기오염방지시설(3종): 1종 시설 54개, 2종 시설 8개, 3종 시설 23개
- 본 추계에 사용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및 연간 운영비용 단가(2018년 기준)는 다음 표와 같음
- 이때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은 추계 첫해인 2020년에만 발생, 운영비용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대기오염방지시설 수 및 설치비용 · 운영비용 단가〉

(2018년 기준, 단위: 개, 백만원)

유형별 \ 규모별		1종			2종			3종		
		시설수	설치비용단가	운영비용단가	시설수	설치비용단가	운영비용단가	시설수	설치비용단가	운영비용단가
①입자상물질(먼지 등)		46	3,000	376	8	1,000	90	22	300	15
가스상물질	②질소산화물(NOx)	2	5,000	638	0	1,500	153	1	500	26
	③황산화물(SOx)	5	6,000	354	0	2,000	103	0	800	22
④축열식연소장치(RTO)(휘발성물질(VOCs) 등)		1	908	673	0	590	337	0	422	179
합계 (85개)		54			8			23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가재정소요

○ 현행법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 면제사업장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예외 없이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

	대상	기준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1]
시나리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존 면제시설(85개)	설치비용[2]	2,012억 5,300만원	402억 5,100만원
		운영비용	1,191억 5,200만원	238억 3,000만원
	합 계		3,204억 500만원	640억 8,100만원

주: 1) 추가재정소요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한 금액임
2) 설치비용의 경우 2020년 단년도에 발생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미설치 배출시설(85개)에 대해 방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 연평균 640.8억원(총 3,204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4.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설치: 「실내공기질 관리법」

어린이집 ·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기기를 신규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 국공립 어린이집 · 노인요양시설에 (예비)형식승인을 거친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191.9억원
- 전체 어린이집 · 노인요양시설에 성능인증을 거친 '실내공기질 간이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비 및 지방비를 일정비율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3.4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최근 미세먼지 등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관심이 커지면서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오염된 실내공기는 각종 환경성 질환(아토피, 천식 등), 새집증후군(두통 · 구토 등) 등의 원인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측정망 또는 측정기기 설치[1]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다수 발의

○ 다만, 최근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 8. 14 제정, 2019. 2. 15 시행)에서는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주호 추계세제분석관 (02-788-3735, progress@nabo.go.kr)

1)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예비형식 승인을 거친 제품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기(측정망보다 상대적으로 저렴)에 대해 성능인증을 받아 사용하도록 규정[2)]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2018. 5. 8.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의무화
	박인숙의원	2018. 5. 17.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의무화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시설은 현행법 시행령[3)]에 따라 규모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

- 연면적 1천㎡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430㎡ 이상인 모든 어린이집[4)]

---

2)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이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법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국회는 최근 제367회(임시회)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외에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을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시설이 되도록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함(의안번호 2019154, 2019.3.13.). 또한 어린이집 중 430㎡ 미만의 시설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본 추계에서는 430㎡ 이상인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추계함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① (예비)형식승인을 거친 '실내공기질 측정망' 또는 ② 성능인증을 거친 '실내공기질 간이 측정기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5)]

- 추계기간 동안 대상 시설 수는 변동하지 않으며, 전체 대상 시설을 추계기간 동안 균분하여 실내공기질 측정망 또는 간이 측정기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연도별 설치비용 및 운영비용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6)] 적용

○ (시나리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이하 "국공립"이라 함)하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 국공립 시설에 설치하는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비용 및 운영비용(소모품 교체, 전기 · 통신요금 등)을 전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법 시행규칙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의 측정항목은 미세먼지(PM_{10})와 이산화탄소(CO_2)이지만, 초미세먼지($PM_{2.5}$)도 측정항목에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

○ (시나리오 2) 전체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내공기질 간이 측정기기' 설치 비용 지원

- 국공립 시설에 대해 설치하는 실내공기질 간이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전부(100%)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5) 형식승인을 거친 실내공기질 측정망은 1대당 설치 비용(약 1억원), 설치 규모(부피) 등의 문제로 전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 · 공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다만, 실내공기질 측정시에는 「환경분야 시험 검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실내공기질 간이 측정기기는 해당 공정시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측정치의 정확도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6) 소비자물가상승률: 1.8%('19), 1.9%('20), 1.9%('21), 1.9%('22), 2.0%('23), 2.0%('24)

- 민간 시설에 대해 설치하는 실내공기질 간이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50%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민간 시설의 경우 설치비용의 50%는 자부담)
- 이때 운영비용(소모품 교체, 전기 · 통신요금 등)은 추계 대상에서 제외

2) 추계 방법

○ (시나리오 1)

추가재정소요 = 국공립 어린이집 · 노인요양시설 수 ×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비용 + 운영비용)

- 국공립 어린이집 1,010개소, 노인요양시설 80개소(2018년 말 기준)[7]
-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비용 및 운영비용 8,160만원, 운영비용 308만 5,000원(2019년 기준)[8]
-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비용 및 운영비용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시나리오 2)

추가재정소요 = 전체 어린이집 · 노인요양시설 수 × 실내공기질 간이 측정기기 구입비용 × 지원비율

- 전체 어린이집 · 노인요양시설 수와 지원비율은 ① 국공립 시설 1,090개소, 지원비율 100%, ② 민간 시설 6,007개소, 지원비율 50%
- 실내공기질 간이 측정기기 구입비용 38.5만원[9]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7) 자료: 보건복지부
8) 자료: 환경부
9) 서울시 서초구청의 관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간이 측정기기 설치 사례를 참고(2017년 10월)하였으며, 대량 구매에 따른 할인율은 고려하지 않음

3) 추가재정소요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국공립 어린이집 ·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191.9억원
시나리오 2	전체(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간이 측정기기 설치 - 국공립 시설 지원비율: 100% - 민간 시설 지원비율: 50%	3.4억원

- (시나리오 1) 국공립 어린이집 ·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예비)형식승인을 거친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연평균 191.9억원(총 959.4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 2) 전체 어린이집 ·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성능인증을 거친 '실내공기질 간이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비 또는 지방비를 일정비율 지원하는 경우, 연평균 3.4억원(총 17.0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V 국방 · 보훈 · 보상 · 법제사법 분야

1.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병역법」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면서

- 대체복무요원의 대체복무 기간을 27개월로 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151억원
- 대체복무요원의 대체복무 기간을 60개월로 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240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하는 경우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 처분을 받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8.6.28.)

❑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의 제·개정안 발의

장만수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67, mansu2678@nabo.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2018. 11. 19.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 사회복지 관련 업무와 소방·의료·재난·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 · 복무기간 27개월
	김진태의원	2018. 12. 21.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 지뢰의 제거 업무와 전사자 유해 등의 조사·발굴 업무 · 복무기간 60개월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국방부의 국방개혁 2.0[1)]에 따라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현역 육군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21 → 18개월)한다고 가정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기간을 27개월로 하는 경우(시나리오 1)와 60개월로 하는 경우(시나리오 2)로 가정

1) 2018년 7월 27일 발표된 국방개혁 2.0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국방부 개혁방안으로 장성 수 줄이기, 군 복무기간 줄이기, 병 봉급의 단계적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군 복무기간은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단축하여 2020년 6월 입대자부터는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이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할 예정임. 또한, 병 봉급의 경우 2020년에는 이등병부터 모든 병사들이 월 40만원 이상의 봉급(병장 540,892원)을 받도록 하고, 2022년에는 2017년 최저임금(135만원)의 50% 수준으로 인상하여 병장 봉급이 676,115원이 되도록 함(자료: 국방부)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 대체복무 신청에 대한 판정기구(병무청 소속 대체복무심사위원회 · 대체복무재심사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대체복무위원회 · 지방대체복무위원회)의 설치 · 운영비 + 대체복무요원의 보수 등 + 대체복무요원의 건강보험금

3) 추가재정소요

○ 대체복무기간에 따른 2020 ~ 2024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대체복무기간 27개월	151억원
시나리오 2	대체복무기간 60개월	240억원

주: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는 추계기간 3년차(2022년) 이후부터 대체복무 기간의 차이에 따라 보수지급액 및 합숙근무 생활비용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복무기간의 차이에 비해 연평균 추가재정소요액의 차이가 크지 않음

- (시나리오 1)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기간을 27개월로 하는 경우, 연평균 151억원(총 757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 2)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기간을 60개월로 하는 경우, 연평균 240억원(총 1,203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라. 참고사항

❑ 국방부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하는 안을 입법예고(2018. 12. 28.)하고 2019년 상반기 중 국회 제출 예정

2.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제도를 도입하면서

-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전보상 없이 주민지원사업과 소음피해 국가보상을 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4,537억원
-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민지원사업과 소음피해 국가보상에 더하여 90웨클 이상인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에 대한 이전보상을 포함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2조 7,837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현재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민간공항 주변 지역의 경우 소음피해 방지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 시행되고 있음

❑ 그런데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은 관련 규정이 없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피해 배상을 받고 있음. 이와 같은 소송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 2018년 현재 우리 군은 민 · 군 겸용공항을 포함하여 전국에 48개의 군용비행장을 운용하고 있음

❑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을 위한 제정안 발의

장만수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67, mansu2678@nabo.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승민의원	2018. 10. 30.	소음영향도 조사, 소음방지시설의 설치, 소음대책사업,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소음피해 보상, 주민지원사업,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종섭의원	2018. 11. 22.	소음영향도 조사, 소음방지시설의 설치, 소음대책사업,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소음피해 보상, 주민지원사업, 이전보상(제1종 및 제2종 구역)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군용비행장의 소음 대책 등에 대한 비용추계는 국방부 연구용역보고서인 「소음대책기준 변경에 따른 소음영향평가 및 예산추계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른 단가 이용

○ 소음영향도가 95웨클 이상인 지역을 제1종 구역으로,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인 지역을 제2종 구역으로, 7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인 지역을 제3종 구역으로 나누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 고시하는 것으로 가정

○ 소음대책사업, 이전보상 및 주민지원사업 등은 과도한 재정부담이 예상되므로 10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 소음영향도 조사비용 + 소음대책사업 비용 + 소음피해 국가보상 비용 +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 운영 비용+ 소음방지시설 설치비용 + 이전보상 비용(이전보상이 있는 경우) + 주민지원사업 비용

3) 추가재정소요

○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따른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소음대책사업, 소음피해 보상, 주민지원사업 등 (이전보상 제외)	4,537억원
시나리오 2	소음대책사업, 소음피해 보상, 주민지원사업 등 (소음영향도 90웨클 이상 이전보상 포함)	2조 7,837억원

- (시나리오 1)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전보상 없이 주민지원사업과 소음피해 국가보상을 하는 경우, 연평균 4,537억원(총 2조 2,684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 2)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민지원사업과 소음피해 국가보상에 더하여 90웨클 이상인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에 대한 이전보상을 포함하는 경우, 연평균 2조 7,837억원(총 13조 9,185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라. 참고사항

❑ 2000년에 최초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이후 2010년에 대구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음피해 배상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있음

❑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총 6,476억원의 소음피해 배상금이 지급되었고, 향후 지속적으로 소음피해 청구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

3. 특별검사 임명 및 운영: 「000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

특정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 등을 임명하고, 120일의 수사기간, 7개월의 공소유지기간을 설정할 경우 단년도에 56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특별검사제도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특정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파견인력으로 구성되어 수사기간과 공소유지기간 동안 설치 및 운영됨

❑ 2018년에 논의가 시작된 특정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000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교일의원	2019. 1. 10.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 등을 임명하고, 120일의 수사기간, 7개월의 공소유지기간 동안 운영
	조원진의원	2019. 1. 14.	

정혜승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64, hs0387@nabo.go.kr)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특별검사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인건비, 직무수행 운영비 및 특별검사 사무실 구조변경 시설비로 구분

- 수사기간동안 인원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4명 및 특별수사관 40명 등 총 45명, 직무수행 활동 인원은 105명(파견인력 60명 포함)으로 가정
- 공소유지기간동안 인원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2명, 특별수사관 6명 등 총 9명, 직무수행 활동 인원은 12명(파견인력 3명 포함)으로 가정
- 수사기간은 120일, 공소유지기간은 7개월로 가정
- 특별검사 등에 대한 처우, 활동기간, 공소유지기간 등이 유사한 2018년 드루킹특검의 2018년 예산 집행내역을 참고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수입 = 특별검사 등 인건비 + 직무수행 운영비 + 특별검사 사무실 구조변경 시설비

3) 추가재정소요

○ 특별검사 등 임명 및 운영에 따른 2020년(단년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20년(단년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특별검사 등 인건비, 직무수행활동비, 사무실 구조변경 시설비	56억원

- (시나리오) 특별검사 등을 임명하여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 동안 운영할 경우 인건비 15.9억, 직무활동비 36.6억, 시설비 3.7억 등 총 56억원(단년도)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Ⅵ 안전 · 행정 분야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국회의원 정수 증가: 「공직선거법」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함께 운용되는 현행 제도에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16명으로 증원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126억원
- 국회의원 정수를 인구 15만명 당 1명으로 규정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355억원
- 국회의원 정수를 인구 14만명 당 1명으로 규정하는 경우(시나리오 3) 연평균 552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방식임. 이는 대량의 사표(死票)를 발생시켜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간의 불일치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아 불리한 선거구에 도전하여 낙선하거나 아까운 표차로 당선되지 못한 후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의석 수를 확대하며, 지역구국

여은구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73, cecil@nabo.go.kr)

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중복입후보를 허용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 발의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2016. 10. 24.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16명으로 규정
	김상희의원	2017.2.14.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인구 15만명당 1명으로 규정
	박주민의원	2017.2.15.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인구 14만명당 1명으로 규정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추가재정소요를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적용

○ 김상희의원안과 박주민의원안은 안 제189조제7항[1]에 따라 추가의석이 발생하는 경우 의원정수가 증가할 수 있으나 그 정확한 인원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부분은 고려하지 않음

○ 추계기간 동안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의원 1인당 8명(4급 2인, 5급 2인, 6급 1인, 7급 1인, 8급 1인, 9급 1인)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국회의원이 사용할 사무실은 의원회관의 기존 사무실 및 회의실 공간을 재배치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1) 안 제189조 ⑦ 의석할당정당이 국회의원선거권역 내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제4항에 따라 해당 권역에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이하 "추가의석"이라 한다)을 획득한 경우 해당 정당은 추가의석을 그대로 보유한다.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 증원 국회의원 인건비 + 의원실 운영경비 + 증원 보좌직원 인건비

3) 추가재정소요

○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국회의원 인건비, 보좌직원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데 따른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16명으로 규정	126억원
시나리오 2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인구 15만명당 1명(345명)으로 규정	355억원
시나리오 3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인구 14만명당 1명(370명)으로 규정	552억원

- (시나리오 1)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16명으로 규정하는 경우 연평균 126억원(총 630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 2)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인구 15만명당 1명(345명[2]으로 확대)으로 규정하는 경우 연평균 355억원(총 1,773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 3)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인구 14만명당 1명(370명[3]으로 확대)으로 규정하는 경우 연평균 552억원(총 2,759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2)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5,181.1만명을 2019년의 주민등록 인구로 가정하면, 의원정수는 345명(5,181.1만명÷15만명)으로 추정함
3)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5,181.1만명을 2019년의 주민등록 인구로 가정하면, 의원정수는 370명(5,181.1만명÷14만명)으로 추정함

2. 어린이통학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용 지원: 「도로교통법」

어린이통학버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면서

-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에 설치비용의 50%를 보조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88억원
-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에 설치비용의 100%를 보조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177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유아 및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운전자 등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도입하였으나 차량 내 유아 방치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이미연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61, mylee@nabo.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2018. 8. 2.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경보장치 설치·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권칠승의원	2016. 8.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고 보조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필요한 시설은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볼 수 있어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당 1개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① 신규 어린이통학버스(연간 6,027대),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미 설치하여 교체대상인 어린이통학버스(연간 3,545대),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가 필요한 기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2년 이내 설치, 연간 23,695대)로 구분[1)]

1)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는 59,089대이고, 이는 2017년 말 기준 53,062대보다 6,027대 증가한 것으로 이를 ① 신규 어린이통학버스 수로 봄. 그리고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미 설치하여 교체대상인 어린이통학버스 수는 17,727대(=59,089대×차량용 블랙박스 보급률 30%)로 추정되며, 5년 교체주기를 적용하여 매년 3,545대(=17,727대×20%)가 교체대상이 됨. 한편, ③ 기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통학버스 수를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추정한다면, 2018년 12월 말 기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통학버스 수와 2019년에 신규 신고될 어린이통학버스 수를 합한 것으로 47,389대(=59,089대×70% + 6,027대)임. 그리고 ③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통학버스는 2020년부터 2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함

〈설치대상 어린이통학버스 수〉

(단위: 대)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① 신규 어린이통학버스		6,027	6,027	6,027	6,027	6,027	30,135
기 신고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교체	3,545	3,545	3,545	3,545	3,545	17,727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필요	23,695	23,695	-	-	-	47,389
합 계		33,267	33,267	9,572	9,572	9,572	95,251

○ 버스 등 대형차량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비용 단가는 2017년 기준 약 86만원[2]으로 추정되며, 추계기간 동안 물가상승률 적용

〈대형차량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용 단가〉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대형차량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용 단가	91만원	92만원	94만원	96만원	98만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율을 시나리오로 구성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 설치대상 어린이통학버스 수 × 설치비용 단가 × 보조율

2) 2017년 12월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한 'GRT버스 차량용 CCTV 구매설치용역'의 경우, 18대의 버스에 8채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금액이 15,411,000원임. 따라서 버스 1대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용은 856,167원임

3) 추가재정소요

○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 따른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50% 보조(국가 25%, 지방자치단체 25%)	88억원
시나리오 2	100% 보조(국가 50%, 지방자치단체 50%)	177억원

- (시나리오 1) 어린이통학버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용의 50%를 보조할 경우, 연평균 88억원(총 442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 2) 어린이통학버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용의 100%를 보조할 경우, 연평균 177억원(총 884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3.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지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노유자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면서

- 설치비용의 20%를 보조할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518억원
- 설치비용의 50%를 보조할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1,294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수용인원이 많거나 규모가 큰 시설물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비교적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노유자(老幼者)시설[1] 등에는 소방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이미연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61, mylee@nabo.go.kr)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르면, 노유자시설은 아래와 같다.
   가.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제8호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이에 노유자시설 등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2018. 2. 22.	노인 · 아동 관련 시설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그 설치 경비를 보조
	신상진의원	2018. 4. 16.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경비를 보조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노유자시설에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기존 노유자 시설과 추계기간 동안 신규로 건설되는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비용임

○ 기존 노유자시설 중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 수는 10,571개소[2)]이며, 5년 이내에 설치를 목표로 연간 2,114개소씩 스프링클러 설치

마.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삼당소만 해당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2) (舊)국민안전처의 「2017년 예방소방행정통계」에 따르면, 45,961개소의 노유자시설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있음. 여기에 스프링클러 설치율 77.4%(舊 국민안전처 자료)를 적용하여 미설치된 시설 수를 추정함

○ 신규 노유자시설은 매년 675개소로 가정[3)]

○ 스프링클러의 설치비용 단가(2020년 기준 추정)는 기존 시설에 설치 시 9,400만원, 신규 시설에 설치 시 7,400만원

- 소방청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단가(2018년 기준)는 기존 시설에 설치 시 90,000원/㎡, 신규 시설에 설치 시 70,000원/㎡[4)]

- 노유자시설의 평균 연면적은 1,010㎡로 추정되며, 추계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을 적용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단가〉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기존 노유자시설	9,400만원	9,600만원	9,800만원	1억원	1억 200만원
신규 노유자시설	7,400만원	7,500만원	7,600만원	7,800만원	8,000만원

○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추계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시설 수 × 설치비용 단가 × 보조율

3) 추가재정소요

○ 노유자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보조에 따른 2020 ~ 2024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3) (舊)국민안전처의 「2016년 예방소방행정통계」와 「2017년 예방소방행정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년 동안 노유자시설은 675개소(=45,961-45,286)가 증가함

4) 소방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근거한 단가이며, 신규 시설은 신축하는 과정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이고 기존 시설은 개축이 필요하므로 설치비용에서 차이가 있음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국고보조율 20%	518억원
시나리오 2	국고보조율 50%	1,294억원

- (시나리오 1) 노유자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의 20%를 국가가 보조할 경우, 연평균 518억원(총 2,589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 2) 노유자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의 50%를 국가가 보조할 경우, 연평균 1,294억원(총 6,472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4. 전자청원시스템 도입: 「국회법」

종이문서의 형태로만 가능한 현행 국회 청원제도에

-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2.7억원(단년도), 유지보수에 연간 1.3억원(3년간) 등 연평균 3억 3,1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현행법 상 국회에 대한 청원은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청원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의 형태로만 제출할 수 청원을 전자적인 형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2018. 4. 23.	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이동섭의원	2018. 8. 24.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청원의 심사경과와 처리결과를 게재하도록 함

정혜승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64, hs0387@nabo.go.kr)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전자청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하드웨어 및 본인인증을 위한 전자서명기능 등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가정

○ 전자청원시스템 운용과정에서 시스템 구축비용 외에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비용(1건당 44원)이 추가되며, 신청 청원건수를 연간 2,000건으로 가정 시 소요비용(88,000원)이 작아 추계에서 제외[1)]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 전자청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

3) 추가재정소요

○ 전자청원제도 도입에 따른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전자청원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축비, 유지보수 등 운영비	3.3억원

- (시나리오) 국회 청원제도와 관련하여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하드웨어 구축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12억 7,200만원(단년도), 유지보수에 3년간 연 1.3억원 등 연평균 3.3억원(총 16.5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1) 참고로, 청원건수를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한 건수로 계산할 경우(2017.8.17.~2019.2.16. 402,320건, 월평균 약 22,351건, 연간 약 268,212건)에는 연간 약 1,1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라. 참고자료: 유럽의 e-청원제도[2)]

	스코틀랜드	독일	영국
도입 시기	2000년	2005년	2006년
내용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원을 6주간 공개 ·해당 기간 동안 토론을 진행할 수 있고 동의자를 모집할 있음	·공개 4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쿼럼' 이라 불리며 청원위원회 토론 안건이 됨	·동의자 5인을 모으면, 청원이 공개되고 청원위원회에서 검토가 시작됨 ·청원 동의자 수가 1만명이 넘으면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고, 10만명이 넘으면 청원위원회 심의안건이 되어 토론에 부쳐짐

2) '유럽의 e-청원제도와 시사점(국회입법조사처, 2018.12.)'을 참조함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제 2 장
수입법안

※ 일러두기: 수입부분의 연평균 재정소요는 재정수입의 감소 · 증가로 표시되었음

Ⅰ 소득과세 분야

1.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소득세법」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금융소득 기준을 현행 2천만원에서

-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3,362억원
-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세율을 14%에서 16%로 인상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5,976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가. 개 요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원천세율(14%)로 분리 과세하는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6~42%)을 적용하는 제도

❑ 소득재분배 및 소득원천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하고, 원천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개정안 발의

○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금융소득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세율을 인상

박지원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62, jwpark1209@nabo.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2018. 5. 21.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2천만원 → 1천만원)
	오제세의원	2018. 10. 5.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원천과세 세율 인상(14% → 16%)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자의 비과세분리과세 대상 금융상품으로의 이동 등의 절세행태변화를 반영하지 않음
- ○ 금융소득 기준금액 인하시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인원 중 약 51.1%만이 종합과세 대상에 편입되는 것으로 가정
- ○ 2013년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4천만원 → 2천만원)시, 2010년 기준 금융소득 2천만 초과~4천만 이하 구간 인원(16.6만명의)의 51.1%에 해당하는 8.5만명이 종합과세 대상에 편입됨
- ○ 향후 세수효과 증가율은 '2019년 NABO 중기 재정전망'의 이자·배당소득세 증가율을 이용

2) 추계 방법

- ○ 기존 과세대상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 신규 과세대상자(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의 세액변동분을 각각 추정하여 합산
-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세액 변동분 = 1인당 산출세액 변동분(개정안 - 현행) × 과세대상자 수

- 1인당 산출세액은 ① 종합과세방식의 산출세액, ② 분리과세방식의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납부

①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현행/개정안) × 14%*
+ {(1인당 종합소득** - ⓐ) × 소득구간별 종합소득금액 대비 과세표준 비율 × 기본세율(6~42%)}

② = 1인당 금융소득(ⓑ) × 14%+{(1인당 종합소득 - ⓑ)
× 소득구간별 종합소득금액 대비 과세표준 비율 × 기본세율(6~42%)}

* 원천과세 세율

** 금융소득규모별 1인당 종합소득 및 금융소득 자료는 국세통계연보(3-1-5) 이용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세액 변동분=1인당 과세표준금액 변화분 × (종합과세 한계세율-14%)×과세대상자 수

- 금융소득규모 1천만원~2천만원 이하 구간의 1인당 금융소득 중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신규 과세
- 동 구간의 종합과세 한계세율은 24%로 가정
- 과세대상자수: 금융소득규모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 인원의 51.1%

○ (세율변동효과) 세수증가분 =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 세율인상분(2%p) × 과세대상자 수

- 금융소득 1천만원 이하: 1인당 금융소득 × 세율인상분(2%p) × 인원수
- 금융소득 1천만원~2천만원 이하: 1천만원* × 세율인상분(2%p) × 인원수

* 1인당 금융소득 중 1천만원 초과분은 종합과세되므로, 1천만원 이하 부분만 원천세율 부과

3) 재정수입 증감

○ 개정안에 따른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1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2천만원→1천만원)	3,362억원
시나리오 2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2천만원→1천만원), 원천과세세율 인상(14%→16%)	5,976억원

- (시나리오 1)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2천만원→1천만원)하는 경우 연평균 3,362억원(총 1조 7,762억원)의 재정수입 증가예상
- (시나리오 2)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2천만원→1천만원)하고, 원천과세 세율을 인상(14%→16%)하는 경우 연평균 5,976억원(총 2조 9,878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라. 참고사항

○ 2017년 기준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는 5,215만 명,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는 25만 명이며, 이들의 1인당 금융소득은 각각 23만원, 1,397만원으로 나타남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자 인원 및 금융소득액(2017년 기준)〉

(단위: 명, 억원, 만원)

	인원	총 금액	1인당 금액
1천만 이하	52,149,495	121,905	23
1천만 초과 2천만 이하	250,658	35,008	1,397
합 계	52,400,153	156,913	30

주: 총 금액은 거주자(법인, 비거주자 제외)의 합산과세소득(비과세, 면제, 무조건분리과세소득 제외) 기준임

자료: 국세청

2. 근로장려금 관련 2018년 개정사항: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세제의 지급 요건을 변경(연령요건 폐지 및 소득·재산요건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는 2018년 개정사항이

- 2019년 시행되는 경우 연평균 2조 2,851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가. 개 요

❑ 근로장려세제는 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로서 2008년도에 도입됨

❑ 지속적인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평균수급액이 낮아 빈곤완화 및 근로유인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근로빈곤층의 소득지원을 강화하고자 신청요건을 완화하거나 지급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

○ 2018년 세제개편에 따라 재산요건 및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인상되는 등 큰 폭으로 확대 개편됨

박지원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62, jwpark1209@nabo.go.kr)

〈근로장려금 확대 관련 2018년 개정사항〉

	개정전	개정후(2019시행)
연령요건	30세 이상	폐지
소득요건(단독/홑벌이/맞벌이)	1,300/2,100/2,500만원	2,000/3,000/3,600 만원
재산요건	1.4억원[1] 미만	2억원[1] 미만
최대지급액(단독/홑벌이/맞벌이)	85/200/250만원	150/260/300만원
최대지급액 구간	600~1,300만원	400~1,700만원
지급시기	다음연도 1회	당해연도 반기별(2회)

주: 1) 가구원 재산합계액임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2018. 9. 20.	소득·재산요건 완화, 지급액 인상
	채이배의원	2018. 10. 23.	과거 5년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소급신청 허용
	서형수의원	2018. 11. 7.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에서 금융기관 차입금을 제외한 순재산 기준 적용

주: 오제세의원안은 대안반영폐기됨(2018.12.8.)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법시행 후 신청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 연도별 세수효과는 2023년까지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연간 가구탈락률(-4.0%)을 반영하여 지급규모가 점차 감소한다고 가정

- 2016~2018년 3년간 수급요건의 변화가 없었던 홑벌이·맞벌이가구의 수급가구수가 연간 4.0% 감소한 것을 반영[1)]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수입 = 2019년 총지급액(= 가구유형별 수급가구수 × 가구당 평균 지급액) - 개정 전(2018) 제도기준 총지급액

○ 2019년 가구유형별 수급가구수 및 지급액은 한국복지패널(2017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추정

- 2017년 가구의 소득 및 구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근로장려세제의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신청요건 및 지급액을 재구성하여 제도개편에 따른 수혜규모를 추정

○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추정한 2019년 기준 수급가구수 및 평균지급액 전망치는 다음과 같음

-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완화, 연령요건 폐지에 따라 수급대상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수는 현행(2018) 대비 각각 73.5%, 85.0%, 110.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2)]

- 지급액 인상에 따라 가구유형별 평균수급액은 각각 83/135/154만원으로 증가,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현행(75만원)보다 38만원 높은 113만원으로 예상됨

1) 2018년은 2018년 9월 지급된 가구수에 기한 후 신청자(12월 지급)를 추정하여 합산한 총 수급가구수를 이용하였음
2) 가구유형별 수급가구수 증가율 예산시 2018년 가구수는 2018년 9월 지급된 가구수(169만가구)에 기한 후 신청자(12월 지급)를 추정하여 합산한 총 수급가구수를 이용하였음

〈근로장려세제 개편 효과: 대상인원 및 지급규모〉

(단위: 만가구, 억원)

	가구	2018년 현행(추정치)	2019년[1] 전망
대상자 (만가구)	단독	83.1	144.3
	홑벌이	83.6	154.6
	맞벌이	11.7	24.7
	합 계	178.5	323.7
지급금액 (억원)	단독	3,711	12,038
	홑벌이	8,368	20,845
	맞벌이	1,353	3,810
	합 계	13,432	36,692

주: 1) 2018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지급액 기준이며, 지급방식 전환에 따른 2019년 지급분은 제외됨
자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260만가구에 1조8천억원 지급」, 보도자료, 2018.9.20.; 보건복지부, '2017년 12차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함

○ 2019년의 경우 지급방식 변경에 따른 추가지급분을 반영

-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발생 다음연도에 1회 지급하는 방식에서 반기별로 2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2019년 상반기소득에 대한 6개월분 추정장려금의 70%를 2019년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

3) 재정수입 증감

○ 2018년 제도개편에 따른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 향후 세수효과는 2023년까지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연간 가구탈락률(-4.0%)을 반영하여 추계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2018년 개정사항 (연령요건 폐지, 소득·재산요건 완화, 지급액 인상 등)	-2조 2,851억원

- 2018년 개정사항대로 수급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는 경우 연평균 2조 2,851억원(총 11조 4,256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3. 방송 통신요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소득자에 한해 방송통신요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하면서

-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120만원으로 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1조 22억원
-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100만원으로 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8,352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가. 개 요

❑ 이동통신 서비스 및 인터넷의 활용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방송 통신 요금에 대한 부담이 문제로 제기됨

❑ 이에 근로자에게 방송통신요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개정안 발의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이동통신 요금, 유료방송 요금, 인터넷 요금 등에 대해 소득에서 연간 120만원 한도로 공제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2016. 8. 23.	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방송통신요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연간 120만원 한도)

강민지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69, min1231@nabo.go.kr)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주가 가구의 방송통신 요금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으로 가정

- 근로자가구가 동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방송통신 요금에 연간 지출하는 비용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
- 동 공제신청 가구주수는 국세청의 근로소득신고인원을 가구당 평균 취업인원수로 나누어 추정

○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NABO(2018.11.)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따른다고 가정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 가구당 평균 연간 방송통신요금 × 근로소득자 유효세율 × 소득공제 신청가구수

〈추계방법〉

변수값	세부내용
가구당 평균 연간 방송통신요금	2017년 가계동향조사에서 근로자가구의 '통신에 대한 지출' 중 '통신서비스에 대한 지출' 자료를 활용 2017년 기준 가구당 연평균 통신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140.4만원임
근로소득자 유효세율	국세통계연보의 2017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를 활용 2017년 근로소득자의 유효세율(결정세액/과세표준)은 11.0%
소득공제 신청가구수	2017년 국세통계연보 및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 가구주가 기본공제대상자의 방송통신요금 소득공제를 신청함에 따라, 면세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를 가구당 평균 취업인원수로 나누어 소득공제 신청 가구주수를 추정

3) 재정수입 증감

○ 근로소득자에 대한 방송통신요금 소득공제 신설에 따른 2020~2024년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1	근로소득자의 방송통신요금 소득공제 신설, 연간 120만원 한도	-1조 22억원
시나리오 2	근로소득자의 방송통신요금 소득공제 신설, 연간 100만원 한도	-8,352억원

- (시나리오 1) 근로소득자에 대한 방송통신 요금 소득공제를 연간 120만원 한도로 신설할 경우, 연평균 1조 22억원(총 5조 112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시나리오 2) 근로소득자에 대한 방송통신 요금 소득공제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신설할 경우, 연평균 8,352억원(총 4조 1,760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4. 소득세율 인상 및 최고 과표구간 확대: 「소득세법」

소득세율 및 최고 과표구간을 현행 수준(6/15/24/35/38/40/42%, 과표 5억원초과)에서

- 소득세율을 인상(24→25%, 38~42→45%)하고, 최고 과표구간을 확대(과표 5억원 초과→과표 1.5억원 초과)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4조 7,488억원
-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38~42→45%)하고, 최고 과표구간을 확대(과표 5억원 초과→과표 1.5억원 초과)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3조 9,518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가. 개 요

❑ 2018년 현재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7개 구간으로 구분되며, 아래 표에서와 같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6~42%의 소득세율이 적용됨

○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8년 귀속소득부터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인상되었으며,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3~5억원 과표구간이 신설됨

〈소득세 세율 변경 연혁 및 세율 인상 시나리오〉

(%)	연혁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과세표준 구간	2014	2017	2018		
0 ~ 1,200만원	6	6	6	6	6
1,200 ~ 4,600만원	15	15	15	15	15
4,600 ~ 8,800만원	24	24	24	25	24
8,800만원 ~1.5억원	35	35	35	35	35
1.5억원~3억원	38	38	38	45	45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0	42		

강민지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69, min1231@nabo.go.kr)

❑ 최근 소득 불평등 악화 및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 확대 등을 위하여 소득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최고 과표구간을 현행 '5억원 초과'에서 '1.5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개정안 발의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2017.11.9.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42→45%) 및 최고과표구간 확대(과표 5억원 초과 → 과표 1.5억원 초과) 등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최신 국세통계 자료인 2017년 귀속기준 소득세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에 2018년 예정되어 있는 세율인상의 제도변화를 추가로 반영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 종합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및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의 과세표준구간별 자료를 활용

○ 향후 5년간 세수효과 증가율은 국회예산정책처(2018.11)의 「2018년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의 세목별 증가율을 따른다고 가정

- 다만,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의 경우 2018년 세법개정에 따라 환급형 세액공제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대폭 확대된 점을 감안하여, 동 효과를 제외한 기준선전망 증가율을 활용

○ 소득세율 변경으로 개인들의 행태 변화가 없을 것으로 가정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수입 = 종합소득세 세수효과 + 근로소득세 세수효과[5] + 양도소득세 세수효과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각각에 대해 세율인상 및 최고과표구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후 합산

○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의 세수효과 = {1인당 과세표준 × 명목세율 변화분× $(1 - \frac{\text{세액공제및감면}}{\text{산출세액}})$} × 일반세율 적용 인원수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종합소득 신고자(중복자)의 경우, 제외 후 추정

○ 양도소득세의 세수효과 = {1인당 과세표준 × (1 - 분리과세 대상)×명목세율 변화분 × $(1 - \frac{\text{세액공제및감면}}{\text{산출세액}})$} × 일반세율 적용 인원수

- 분리과세 대상: 양도소득 관련 총과세표준에서 주식 및 고율과세 대상 자산

3) 재정수입 증감

○ 소득세 세율 인상 및 최고 과표구간 확대에 따른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5)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종합소득 신고자(중복자)의 경우, 이를 제외 후 세수효과를 추정함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1	소득세 세율 인상 및 최고 과표구간 확대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8,800만원/ **1.5억원~:** 6%, 15%, **25%**, 35%, **45%**)	4조 7,488억원
시나리오 2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및 최고 과표구간 확대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8,800만원/ **1.5억원~:** 6%, 15%, 24%, 35%, **45%**)	3조 9,518억원

- (시나리오 1) 소득세의 세율을 인상(24→25%, 38~42→45%)하고, 최고 과표구간을 확대(5억원 초과→1.5억원 초과)할 경우, 연평균 4조 7,488억원(총 23조 7,438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 (시나리오 2) 소득세의 세율을 인상(38~42→45%)하고, 최고 과표구간을 확대(5억원 초과→1.5억원 초과)할 경우, 연평균 3조 9,518억원(총 19조 7,591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II 법인과세 분야

1. 법인세율 조정(인상 · 인하): 「법인세법」

법인세율을 현행 수준(과세표준 구간별 10~25%)에서

- 과세표준 20억 초과구간의 세율 20~25%를 25%로 인상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6.24조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 9~22.5%로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6.05조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가. 개 요

❑ 현행법상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200억원, 200~3,000억원, 3,0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각각 10%, 20%, 22%, 25%의 법인세율 적용

〈법인세율〉

(단위: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2008</th><th>2009</th><th>2010</th><th>2012</th><th>2018</th></tr>
<tr><th>2단계</th><th>2단계</th><th>2단계</th><th>3단계</th><th>4단계</th></tr>
<tr><td>2억원 이하</td><td>13</td><td>11</td><td>10</td><td>10</td><td>10</td></tr>
<tr><td>2~200억원</td><td rowspan="3">25</td><td rowspan="3">22</td><td rowspan="3">22</td><td>20</td><td>20</td></tr>
<tr><td>200~3,000억원</td><td rowspan="2">22</td><td>22</td></tr>
<tr><td>3,000억원 초과</td><td>25</td></tr>
</table>

❑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견해와 조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백경엽 추계세제분석관 (02-788-4746, kybaek@nabo.go.kr)

❑ 이에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개정안과 인상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2018. 4. 12.	~2억원/2억원~: 8%, 20%
	강효상의원	2018. 4. 11.	~2억원/~200억원/200억원~: 10%, 20%, 22%
	노회찬의원	2017. 11. 8.	~2억원/~20억원/20억원~: 10%, 20%, 225%
	정갑윤의원	2017. 7. 10.	~2억원/~10억원/~20억원/~80억원/~140억원/~200억원/200억원~: 10%, 12%, 14%, 16%, 18%, 20%, 22%
	이언주의원	2016. 10. 19.	~2억원/~200억원/~2,000억원/~5,000억원/~1조원/1조원~: 10%, 20%, 23%, 26%, 29%, 32%
	박주현의원	2016. 10. 19.	~2억원/2억원~: 10%, 25%
	김성식의원	2016. 9. 27.	~2억원/~200억원/200억원~: 10%, 20%, 24%
	박영선의원	2016. 9. 27.	~2억원/~200억원/~500억원/500억원~: 10%, 20%, 22%, 25% (단, 최고세율 1차연도 23%, 2차연도 24%)
	윤호중의원	2016. 9. 27.	~2억원/~200억원/~500억원/500억원~: 10%, 20%, 22%, 25%
	박주민의원	2016. 9. 27.	~2억원/~500억원/500억원~: 10%, 22%, 25%
	김동철의원	2016. 9. 27.	~2억원/~100억원/~200억원/200억원~: 10%, 20%, 22%, 25%

주: 박영선의원안, 박주민의원안, 김동철의원안은 폐기됨(2018.2.9.)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향후 전체기업 및 법인당 과세표준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전망과 같을 것으로 가정

- 경상성장률에 대한 과세표준의 탄력성이 1이라고 가정
- 향후 법인수가 2016년과 같을 것으로 가정

○ 법인세율 변경으로 인한 법인들의 행태변화가 없을 것으로 가정

○ 과세표준 최고구간 변경과 세율을 동시 인상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대비 10%씩 인하하는 시나리오를 가정

- (세율 인상) ~2억원/~20억원/20억원~: 10%, 20%, 25%
- (세율 인하) ~2억원/~200억원/~3,000억원/3,000억원~: 9%, 18%, 19.8%, 22.5%

2) 추계 방법

○ 과세표준 구간별로 '1개 법인당 세법개정 전후의 법인세 차이×법인 수' 방식으로 구간별 세수변화를 계산한 후, 각 과세표준 구간의 세수효과를 합산

3) 재정수입 증감

○ 법인세율 인상 또는 인하에 따른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1	~2억원/~20억원/20억원~: 10%, 20%, 25%	6.24조원
시나리오 2	~2억원/~200억원/~3,000억원/3,000억원~: 9%, 18%, 19.8%, 22.5%	-6.05조원

- (시나리오 1) 과세표준 20억원 초과구간의 세율 20~25%를 25%로 인상하는 경우, 연평균 6.24조원(총 31.2조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 (시나리오 2) 과세표준 구간별 10~25%인 세율을 9~22.5%로 인하하는 경우 연평균 6.05조원(총 30.26조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2. 최저한세율 조정(인상 ·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최저한세율을 현행 수준(중소기업 7%, 일반기업 과세표준 구간별 10~17%)에서

-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 12% 및 17%를 각각 14% 및 18%로 인상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2,815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 중소기업 및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 7% 및 10%를 각각 5% 및 8%로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559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가. 개 요

❑ 「법인세법」은 공제 · 감면을 받더라도 혜택이 과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저한세 제도를 시행

○ 각종 공제 · 감면으로 납부해야할 법인세액이 최저한세액(=감면전 과세표준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

○ 현재 중소기업은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일반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10%, 12%, 17%를 적용

백경엽 추계세제분석관 (02-788-4746, kybaek@nabo.go.kr)

〈최저한세율〉

(단위: %)

소득귀속연도	중소기업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과세표준 1,000억원 이하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2012	7	10	11	14
2013	7	10	12	16
2014~(현행)	7	10	12	17

❑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한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견해와 조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최저한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 이에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는 개정안과 인상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2018. 4. 12.	현행 중소기업/일반 ~100억원/ 일반 ~1,000억원/ 일반 1,000억원~: 7%, 10%, 12%, 17% →5%, 8%, 12%, 17%
	노회찬의원	2017. 11. 9.	7%, 10%, 12%, 17% → 7%, 10%, 15%, 20%
	이언주의원	2016. 10. 19.	7%, 10%, 12%, 17% → 7%, 10%, 14%, 19%
	정성호의원	2016. 7. 4.	7%, 10%, 12%, 17% → 7%, 10%, 14%, 18%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향후 전체기업 및 법인당 과세표준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전망과 같을 것으로 가정

- 경상성장률에 대한 과세표준의 탄력성이 1이라고 가정
- 향후 법인수가 2016년과 같을 것으로 가정

○ 최저한세율 변경으로 인한 법인들의 행태변화가 없을 것으로 가정

○ 주요 시나리오

- (세율 인상)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일반기업 12%, 17%→14%, 18%
- (세율 인하) 중소기업 및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일반기업 7%, 10%→5%, 8%

2) 추계 방법

○ 유효세율이 a%보다 낮을 경우, 개정 전에 '과세표준×최저한세율 a%'의 법인세를 납부하지만, 개정 후에는 '과세표준×최저한세율 b%'의 법인세를 납부하므로, 세수효과는 '과세표준×최저한세율 변화분 (b - a)%p'임

○ 유효세율이 a%보다 높지만 b%보다 낮은 기업은 개정 전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다가, 개정 후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으므로, 세수효과는 '과세표준×(b% - 유효세율)'임

3) 재정수입 증감

○ 최저한세율 인상 또는 인하에 따른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1	7%, 10%, 12%, 17%→7% 10%, **14%, 18%**	2,815억원
시나리오 2	7%, 10%, 12%, 17%→**5%, 8%**, 12%, 17%	-559억원

- (시나리오 1)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 12%, 17%를 각각 14%, 18%로 인상할 경우, 연평균 2,815억원(총 1조 4,074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 (시나리오 2) 중소기업 및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 7%, 10%를 각각 5%, 8%로 인하할 경우, 연평균 559억원(총 2,794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현행 해당기업 재취업에서

- 모든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로 개정하는 경우 연평균 469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가. 개 요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급하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2년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절 여성이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재입사한 경우에만 적용

❑ 현행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는 퇴직한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 적용 요건을 모든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로 완화하는 개정안 발의

백경엽 추계세제분석관 (02-788-4746, kybaek@nabo.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2017. 7. 7.	경력단절 여성이 모든 기업에 재고용된 경우 적용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박인숙의원	2017. 8. 25.	최소 경력단절 기간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요건 완화

주: 이찬열의원안, 박인숙의원안 대안반영 폐기됨(2017.12.1.)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경력단절 여성 인원 및 재취업 인원은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를 기초로 하며, 인건비는 여성가족부의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국회예산정책처의 임금상승률 전망 등을 활용

-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중 재취업 인원 20.5%가 유지된다고 가정
- 향후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성가족부의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의 평균 임금액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임금상승률 적용

2) 추계 방법

○ 추가 재정소요 = (경력단절여성 중 재취업 인원 × 1인당 평균 임금액) × 법인세 납부 기업 비중

-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른 법인세 신고 기업 중 부담세액이 있는 기업 수 비중 55.4%를 적용(2017년 신고기준)

3) 재정수입 증감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을 완화함에 따른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해당기업에 재고용→모든 기업에 재취업	-469억원

- (시나리오)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요건을 해당 기업 재취업에서 모든 기업 재취업으로 완화할 경우, 연평균 469억원(총 938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라. 참고사항

❑ 최근 개정연혁 및 쟁점

○ 2016년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 확대

- 3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10년 미만

○ 2017년 공제 적용 기업, 공제율, 공제 적용기간 확대

- 공제적용기업: 중소기업→중소·중견기업
- 공제율: 10%→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 공제 적용기간: 재고용 후 1년→재고용 후 2년

4. 혁신형 제약기업 기술대여소득 과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현행 2021년 말)기한을

- 폐지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5억원
- 폐지하고, 과세특례 대상(현행 중소기업)에 혁신형 제약기업을 추가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11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가. 개 요

❑ 특허권 등을 기술이전하는 중견·중소기업, 기술취득하는 내국인, 기술대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동 제도의 일몰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임

○ 기술이전: 중견 및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 50% 세액감면

○ 기술취득: 기술취득금액의 5%(중소기업 10%) 세액공제

○ 기술대여: 중소기업의 기술대여소득 25% 세액감면

❑ 이에 기업 간 기술거래를 통한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동 제도의 일몰을 폐지하거나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추가하는 등 동 제도를 확대하는 개정안 발의

태정림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47, jitae@nabo.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2018. 9. 6.	특허권 등 취득, 이전, 대여 등 기술 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3년 연장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폐지하는 경우(시나리오 1)와 적용대상에 혁신형 제약기업을 추가하는 경우(시나리오 2)로 가정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의 일몰 연장 재정소요는 '조세지출예산서'의 최근 실적치와 전망치를 토대로 추계

○ 과세특례 대상에 추가되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추계시점의 인증기업 중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동 기업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가정

- 혁신형 제약기업 : 국내 경영활동 수행 제약기업 중 제약분야 R&D 우수기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정(「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2019년 2월, 혁신형 제약기업은 총 47개사이고 지정 유효기간은 3년임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 혁신형 제약기업 기술대여소득 × 법인세 실효세율 × 세액감면율

〈추계 방법〉

변수값	세부내용
혁신형 제약기업 기술대여소득	• 기술대여소득 관련 통계가 없으므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계 • 혁신형 제약기업 기술대여소득 259억원=A×B - 혁신형 제약기업의 재무제표상 매출액(A)=140,684억원 - 일반기업 매출액 대비 사용료 및 로열티 수입액 비중(B) =18%(2015~2017년 평균,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법인세 실효세율	17.2% (법인세 실효세율=법인세 총부담세액/과세표준×100, 2018 국세통계연보, 8-1-1. 법인세 신고현황을 토대로 계산)
세액감면율	개정안의 감면율 25%

3) 재정수입 증감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일몰폐지(시나리오 1) 또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술대여소득 과세특례 신설(시나리오 2)에 따른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1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폐지	-5억원
시나리오 2	기술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술대여소득 추가	-11억원

- (시나리오 1) 기술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폐지할 경우, 연평균 5억원(총 16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시나리오 2) 기술이전 등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술대여소득을 추가하고, 25%의 세액공제 적용을 신설할 경우, 연평균 11억원(총 56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5.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일몰(현행 2019년 말)기한을

- 5년 연장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180억원
- 3년 연장하고, 1인당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대비 2배 인상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360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가. 개 요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동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임

❑ 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제고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인상하는 개정안 발의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2018. 9. 6.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1인당 공제액 인상 및 일몰 5년 연장
	오제세의원	2018. 9. 28.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일몰 3년 연장

태정림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47, jitae@nabo.go.kr)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일몰 연장 재정소요는 '조세지출예산서'의 실적치 및 전망치를 활용

○ 동 세제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비중은 추계시점의 비중이 향후 비용추계 기간 동안 고정되어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제도 활용 비중(2017년 법인세 신고 기준): 중소 99.5%, 중견 0.5%
- 세액공제 한도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행태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 기업규모별 세액공제 실적 × 공제액 변동분

3) 재정수입 증감

○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일몰 5년 연장(시나리오 1) 또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일몰 3년 연장 및 한도 2배 인상(시나리오 2)에 따른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1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일몰 5년 연장	-180억원
시나리오 2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일몰 3년 연장 및 공제한도 2배 인상	-360억원

- (시나리오 1)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일몰을 5년 연장할 경우, 연평균 180억원(총 900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시나리오 2)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일몰 3년 연장 및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대비 2배 인상할 경우, 연평균 360억원(총 1,080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Ⅲ 재산과세 분야

1. 상속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인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정기간 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공제해주는 현행 신고세액공제 3%를

- 폐지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2,163억원
- 일감을 몰아주거나 떼어주는 기업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해 신고세액공제를 미적용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22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가. 개 요

❑ 납세의무자가 일정기간 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등을 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고 있음

○ 신고세액공제율은 2016년까지 10%가 적용되다가 2017년 7%로 인하하였고,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세액공제율을 2018년 5%, 2019년 이후 3%로 단계적 인하

○ 일감을 몰아주거나 떼어주는 기업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세액 산정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 다만, 상속 · 증여재산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의 본래 목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 (02-788-4838, hkkim@assembly.go.kr)

❑ 이에 신고세액공제율을 폐지하거나 특수관계법인 간 증여의제이익의 경우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미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 또는 대표발의	제안 또는 발의일자	주요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장(대안)	2017. 12. 1.	신고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 ('17년 7%→'18년 5%→'19년 3%)
	박주현의원	2017. 9. 29.	신고세액공제율 폐지
	김정우의원	2018. 8. 29.	일감 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등의 경우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적용 배제

주: 박주현의원안은 대안반영폐기됨(2017.12.1.)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2017년 상속세(2,347억원) 및 증여세(3,452억원) 신고세액공제액(합계 5,799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특수관계법인 간 증여의제이익 관련 신고세액공제액: 2017년 94억원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이 기준일로부터 각각 6개월과 3개월이고, 특수관계법인 간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과세는 귀속연도 다음해에 징수되는 점을 감안하여 징수기준으로 세수효과 환산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수입 = 신고세액공제액 × 공제율 인하분

3) 재정수입 증감

○ 신고세액공제율 인하 및 축소에 따른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1	신고세액공제율 폐지: 3%→0%	2,163억원
시나리오 2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에 한해 신고세액공제 적용 배제	22억원

- (시나리오 1) 신고세액공제율을 폐지할 경우, 연평균 2,163억원(총 1조 814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 (시나리오 2)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등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해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미적용할 경우, 연평균 22억원(총 112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2.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율 인상: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현행 장기보유 공제율(20년 이상 보유 50%)을

- 20년 이상 보유 60%로 인상하는 경우 연평균 19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가. 개 요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중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령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적용

○ 고령공제는 10~30%, 장기보유공제는 20~50%까지 적용가능하며, 양 공제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최대 70%까지만 가능

○ 1세대 1주택자 중 60세 미만, 4년 미만 보유인 경우 공제 미적용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율〉

고령공제 / 장기보유공제	59세 이하	60~64세	65~69세	70세 이상
0~4년 보유	0%	10%	20%	30%
5~9년 보유	20%	30%	40%	50%
10~14년 보유	40%	50%	60%	70%
15년 이상 보유	50%	60%	70%	70%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 (02-788-4838, hkkim@assembly.go.kr)

❑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투기목적 없이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제기

❑ 이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개정안 발의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 또는 대표발의	제안 또는 발의일자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 위원장(대안)	2018. 12. 8.	15년 이상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인상 - 40%→50% - 단, 1세대 1주택 공제율 한도 70%
	박성중의원	2018. 8. 30.	10년 이상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인상 - 40%→100% - 1세대 1주택 공제율 한도 없음
	이은재의원	2018. 9. 5.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모두 인상 - 고령공제: 10~30%→30~70% - 장기보유공제: 20~40%→30~50% - 1세대 1주택 공제율 한도 없음

주: 박성중의원안과 이은재의원안은 대안반영폐기됨(2017.12.8.)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2016년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보유기간별 · 연령별 세액공제 실적을 적용

○ 추계대상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액은 2013~2017년간 실적치의 연평균 증가율(18.1%)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2018년 세법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2019년 세수 증가효과(30.1%)를 반영

- 20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액(추정): '17년 24억원, '18년 29억원, '20년 65억원, '21년 77억원 등(※ '16년 실적치: 18억원)

○ 시나리오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공제율 인상: 50%→60%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수입 = 세액공제액 × 공제율 인하분

3) 재정수입 증감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공제율 인상에 따른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20년 이상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인상: 50%→60%	- 19억원

- 20년 이상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을 10%p 인상할 경우 연평균 19억원(총 93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3. 운송사업용 전기버스 취득세 면제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운송사업용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 85%로 인상하는 경우 연평균 32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가. 개 요

❑ 현재 운송사업용 버스(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 포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 적용기한: 2021.12.31.까지

❑ 친환경 운송수단으로써 운송사업용 전기버스 등의 보급·확산을 위해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 이에 운송사업용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에 한해 2022.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개정안 발의

○ 다만, 지방세감면 특례 제한에 따라 100%가 아닌 85% 감면율 적용[1)]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 (02-788-4838, hkkim@assembly.go.kr)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함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2018. 11. 28.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의 취득세를 2022.12.31.까지 면제 (다만, 지방세감면 특례 제한에 따라 85% 감면율 적용)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2019년 추가구입 예정인 전기버스 수요량(300대)과 대표적인 전기버스의 2018년말 출고가격(4.5억원)을 이용

○ 유사 감면제도인 천연가스버스 취득세 면제제도의 2011~2016년 감면 실적을 참고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수입 = (감면건수 × 출고가격 × 취득세율) × 감면율인상분

3) 재정수입 증감

○ 취득세 면제 신설에 따른 2020~2022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 취득세 면제 - 감면율 인상: 50%→85% - 적용기한 연장: 2021.12.31.→2022.12.31.	-32억원

-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설할 경우, 연평균 32억원(2020~2022년 총 95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2020~2021년은 감면율 인상효과(50%→85%)로 인해 지방세수가 각각 20억원, 21억원 감소

* 2022년은 일몰연장 효과(폐지→85%)로 인해 지방세수가 53억원 감소

4.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현행 취득세 감면요건(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 주택가액 요건을 4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경우(시나리오 1) 50억원
- 주택전용면적 요건을 85㎡ 이하로 완화하는 경우(시나리오 2) 638억원
- 주택가액 요건과 주택전용면적 요건을 모두 완화하는 경우(시나리오 3) 1,007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가. 개 요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에 한해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제도를 2019.12.31.까지 적용

○ 감면요건은 ① 결혼식 3개월 전~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혼부부 (재혼 포함, 만 20세 이상), ②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③ 직전연도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홑벌이 5천만원) 이하, ④ 취득주택 가액이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

○ 적용 취득세율: 0.5~1.0%(취득가액 3~4억원인 경우 1.0%)

❑ 최근 혼인율 하락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주거 마련 등이 지적됨

❑ 이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 발의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 (02-788-4838, hkkim@assembly.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제출) 또는 대표발의	제안(제출) 또는 발의일자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 위원장(대안)	2018. 12. 6.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결혼후 5년 이내)에 대해 2019.12.31.까지 취득세 50% 감면
	정부	2018. 10. 5.	(위와 동일 내용)
	오제세의원	2018. 10. 1.	(위와 동일 내용)

주: 오제세의원안과 정부제출안은 대안반영폐기(2018.12.6.)되었고,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이 본회의 통과(2018.12.7.)되어 2019.1.1.부터 시행 중임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2017년 주거실태조사」의 60,640가구 자료를 활용

○ 동 추정비율을 2013~2017년 결혼한 혼인건수(147.7만건)로 확대하여 전체 감면액 추정

○ 2012~2016년 동안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증가율을 적용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수입 = (현행세법 감면요건 만족비율* × 5년간 혼인실적) × 현행세법 평균감면액*) − (개정안 감면요건 만족비율* × 5년간 혼인실적) × 개정안 평균감면액*)

* 동 모수(parameter)는 「주거실태조사」 미시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

3) 재정수입 증감

○ 지방세특례 감면요건 완화에 따른 2020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20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1	주택가액 요건 완화: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4억원 이하(수도권 5억원 이하)	-50억원
시나리오 2	전용면적 요건 완화: $60m^2$이하→$85m^2$이하	-638억원
시나리오 3	주택가액 요건 완화: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4억원 이하(수도권 5억원 이하) 전용면적 요건 완화: $60m^2$이하→$85m^2$이하	-1,007억원

- (시나리오 1) 주택가액 요건을 4억원 이하(수도권 5억원 이하)로 완화할 경우, 2019년 기준 50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시나리오 2) 전용면적 요건을 국민주택 규모($85m^2$)로 완화할 경우, 638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시나리오 3) 주택가액요건과 전용면적요건을 모두 완화할 경우, 1,007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Ⅳ 소비과세 분야

1. 보건용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보건용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 면세로 전환하는 경우 연평균 439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가. 개 요

❑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의견 제기

❑ 이에 보건용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전환하는 개정안 발의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02-788-4838, hkkim@assembly.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2018. 4.1 18.	보건용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에 따르는 제품[1]을 대상으로 추정하고, 공기청정기의 경우 관련 부품은 자료의 한계로 추정에서 제외

○ 향후 세수변화는 최근 세수를 기준으로 NABO 전망(2018.10.) 부가가치세수 증가율(2019~2020년, 4.0~4.4%)에 따를 것으로 가정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수입 = 보건용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의 부가가치 × 10%세율
= (각 제품의 제조 · 유통단계 공급가액 × 부가가치율) × 10%세율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전 가격
- (부가가치율 적용) 면세제도는 적용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만 면제되고 전 단계에서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재화 가격에 포함되어 잔존하는 '부분 면제'의 개념이므로,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면세대상인 부가가치를 산출

1)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임

〈추계 방법〉

변수값	세부내용
부가가치	제조 · 유통 각 단계의 공급가액에 해당 산업 평균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산출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가액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사 기준 공급대가 자료를 활용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제외 가격 -제조사 공급가액: 2017년 309억원(국내 307억원, 수입 2.7억원) -유통사 공급가액: 유통사의 매입원가(=제조사의 공급가액)와 부가가치액의 합
공기청정기의 공급가액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유통사 기준 공급대가 자료를 활용 -유통사 공급가액: 2017년 9,091억원 -제조사 공급가액: 유통사의 매입원가(=유통사의 공급가액-부가가치액)와 동일
부가가치율	국세통계연보 상 2014~2016년의 업종별 평균 : 제조업 27.2%, 소매업 18.8%

3) 재정수입 증감

○ 보건용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전환함에 따른 2020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20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보건용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	-439억원

- (시나리오) 보건용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0년 말까지 1년 간 면제할 경우, 연평균 439억원(총 439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보건용 마스크 약 422억원, 공기청정기 약 18억원 감소

2. 주택용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부가가치세법」

주택용 전기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 면세로 전환하는 경우 연평균 683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가. 개 요

❑ 현재는 주택용 전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 구입에 대해 국민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주택용 전기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전환하는 개정안 발의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2018. 10. 8.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공급약관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용 전기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전환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02-788-4838, hkkim@assembly.go.kr)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2017년 주택용 전기에 대한 공급가액 추정치를 활용

-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

○ 향후 부가가치세는 최근의 주택용 전기 공급가액의 연평균 증가율(2014~2016년, 1.3%)[1]이 동일한 수준으로 이어질 것으로 가정

- 공급가액은 판매량과 단가[2]에 따라 변화할 것이나, 각각의 변동을 추정하기 어려워 공급가액의 최근 추이를 반영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수입 = 주택용 전기 공급가액 × 전력업 부가가치율 × 10%세율

- (부가가치율 적용) 면세제도는 적용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만 면제되고 전 단계에서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재화 가격에 포함되어 잔존하는 '부분 면제'의 개념이므로,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면세대상인 부가가치를 산출

1) 2017년 전기요금 누진제의 완화가 증가율 감소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분석에서는 2016년까지의 증가율을 적용함

2)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요금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의 자문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 요금 조정안을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함으로써 결정함(자료: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전기요금 원가정보: 2. 전기요금 결정체계")

〈추계 방법〉

변수값	세부내용
주택용 전기 공급가액	주택용 전기 판매액(한국전력공사 제공자료)을 바탕으로 공급가액을 추정 주택용 전기 판매액은 ①공급가액, ②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 ③전력기금(공급가액의 3.7%)의 합계 이에 따라 주택용 전기 공급가액을 '판매액×(1,000/1,137)'으로 계산하면, 2017년 주택용 전기 판매액이 7조 4,373억원이므로 공급가액은 6조 5,412억원 수준
부가가치율	한국전력공사의 최근 부가가치세 납부 실적을 바탕으로, 2015~2017년 평균 부가가치율을 9.8%로 하여 추정 부가가치율=[(매출세액*-매입세액)/매출세액]×100 *매출세액은 영세율 매출분을 제외한 금액

3) 재정수입 증감

○ 주택용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전환함에 따른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공급약관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용 전기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전환	-683억원

- (시나리오) 주택용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전환할 경우, 연평균 683억원(총 3,414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3. 발전용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개별소비세법」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부과되는 현행 개별소비세율(46원/kg)을

- 2024년까지 60원/kg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경우 연평균 5,226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가. 개 요

❑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2014년 7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5차례 기본세율 및 탄력세율을 상향조정하였음

○ 기본세율은 24원/kg에서 2017년 30원/kg, 2018년 36원/kg으로 인상

○ 2018년 세법개정에 따라 2019년 4월 이후 46원/kg으로 인상[1)]

❑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고 천연가스(세율 60원/kg) 등 타 연료와의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세율조정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발전용 유연탄에 과세되는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는 개정안 발의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02-788-4838, hkkim@assembly.go.kr)

1) 2019년 4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의 세율을 36원/kg에서 46원/kg으로 인상하는 한편, 발전용 LNG의 세율을 60원/kg에서 12원/kg으로 인하함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제출) 또는 대표발의	제안(제출) 또는 발의일자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8. 8. 31.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36원/kg에서 46원/kg으로 인상 (2019년 4월 1일 시행)
	이원욱의원	2018. 10. 26.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 2019년 40원/kg 2020년 44원/kg 2021년 48원/kg 2022년 52원/kg 2023년 56원/kg 2024년 이후 60원/kg
	기획재정 위원장(대안)	2018. 12. 1.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36원/kg에서 46원/kg으로 인상 (2019년 4월 1일 시행)

주: 정부안은 대안반영폐기,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이 통과됨(2018.12.08.)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이원욱의원안을 바탕으로 추계하되, 세율이 46원/kg을 초과하는 2021년 이후의 세율 변화를 적용

- 이미 2018년 세법개정으로 2019년 4월부터 세율이 36원/kg에서 46원/kg으로 인상되었음을 감안

○ 개정안에 따른 개별소비세율 인상 이후에도 발전용 연료 소비량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수입 = 발전용 유연탄 소비량(전망) × 세율 변화분

〈추계 방법〉

변수값	세부내용
발전용 유연탄 소비량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망을 이용 2019년 877억kg → 2020년 869kg → 2021년 883kg → 2022년 이후 937억kg

3) 재정수입 증감

○ 발전용 유연탄 세율 인상에 따른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46원/kg에서 60원/kg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2021년 48원/kg 2022년 52원/kg 2023년 56원/kg 2024년 이후 60원/kg	5,226억원

- (시나리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46원/kg에서 2024년 60원/kg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경우, 연평균 5,226억원(총 2조 4,362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4.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개별소비세법」

등유에 대해 부과되는 현행 개별소비세(세율 90원/ℓ, 탄력세율 63원/ℓ)에서

-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1,769억원
- 개별소비세율을 10원/ℓ로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1,488억원의 재정 수입 감소 예상

가. 개 요

❑ 등유에 대한 법정 개별소비세율은 90원/ℓ[1]으로,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63원/ℓ[2]을 부과하고 있음

○ 교육세(surtax)를 개별소비세액의 15%로 과세[3]

❑ 저소득층 중 일부가 난방용으로 등유를 사용하고 있어, 저소득층 등유 소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

❑ 이에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개정안 발의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02-788-4838, hkkim@assembly.go.kr)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3) 「교육세법」 제5조제2호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의원	2018. 2. 28.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폐지
	유승희의원	2018. 11. 6.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90원/ℓ에서 10원/ℓ으로 인하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향후 등유 소비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수요전망(2018.8.)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

- 2022년 전망치의 전년대비 감소율(-5.6%)이 2023~2024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수입(개별소비세) = 등유 소비량(전망) × 개별소비세율 변화분

- 개별소비세 감소에 따른 교육세 감소분을 합산

〈추계 방법〉

<table>
<tr><th>변수값</th><th>세부내용</th></tr>
<tr><td>등유 소비량</td><td>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망을 이용
<table>
<tr><td>연도</td><td>2015</td><td>2016</td><td>2017</td><td>2018e</td><td>2019e</td></tr>
<tr><td>백만 배럴</td><td>16.2</td><td>19.1</td><td>19.0</td><td>19.4</td><td>18.2</td></tr>
<tr><td>증가율(%)</td><td>5.0</td><td>17.9</td><td>-0.5</td><td>2.1</td><td>-6.2</td></tr>
<tr><td>연도</td><td>2020e</td><td>2021e</td><td>2022e</td><td>2023e</td><td>2024e</td></tr>
<tr><td>백만 배럴</td><td>17.1</td><td>16.2</td><td>15.3</td><td>14.5</td><td>13.7</td></tr>
<tr><td>증가율(%)</td><td>-6.0</td><td>-5.3</td><td>-5.6</td><td>-5.6</td><td>-5.6</td></tr>
</table></td></tr>
<tr><td>개별소비세율 변화분</td><td>·현행 등유에 대한 법정 개별소비세율은 90원/ℓ이나 탄력세율 적용으로 63원/ℓ을 적용
·따라서 세율 변화분은 63원/ℓ과 개정안의 세율과의 차이로 계산</td></tr>
<tr><td>교육세</td><td>부가세(surtax)로, 개별소비세액의 15%을 적용</td></tr>
</table>

3) 재정수입 증감

○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하에 따른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1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폐지	-1,769억원
시나리오 2	등유에 대한 법정 개별소비세율을 90원/ℓ(탄력세율 63원/ℓ)에서 10원/ℓ으로 인하	-1,488억원

- (시나리오 1)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할 경우, 연평균 1,769억원(총 8,845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연평균 개별소비세 1,538억원(총 7,692억원) 감소
* 연평균 교육세 231억원(총 1,154억원) 감소

- (시나리오 2)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10원/ℓ으로 인하할 경우, 연평균 1,488억원(총 7,441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연평균 개별소비세 1,294억원(총 6,471억원) 감소
  * 연평균 교육세 194억원(총 971억원) 감소

5. 증권에 대한 거래세율 인하: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현행 증권거래세율 0.3%(장외시장 0.5%)를

- 0.1%로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 1) 연평균 3.0조원
- 즉시 폐지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5.2조원
- 0.15%로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 3) 연평균 1.8조원
- 거래세율 단계적 폐지의 경우(시나리오 4) 연평균 4.8조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가. 개 요

❑ 증권에 대한 거래세율은 유가증권 0.3%, 비장상주식의 경우 0.5%임

○ 법정 증권거래세율은 0.5%

○ 시행령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0.15%, 코스닥 · 코넥스시장은 0.3%의 탄력세율을 적용

*유가증권시장은 농어촌특별세 0.15%가 추가되어 총 0.3% 세율 적용

〈주식에 대한 거래세율〉

과세항목	증권거래세 (법정세율 0.5%)	농어촌특별세	합계
유가증권시장	0.15%	0.15%	0.30%
코스닥 및 코넥스시장,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거래분	0.30%	-	0.30%
기타(비상장주식 등)	0.50%	-	0.50%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 (02-788-4838, hkkim@assembly.go.kr)

❑ OECD 33개 국가 중 증권거래에 대해 일부라도 과세하는 국가는 19개국이며, 14개국은 과세하지 않고 있음

〈OECD국가의 증권거래세 과세 현황〉

분류	국가명
과세(19개국)	호주, 벨기에, 칠레(양도소득세),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터키, 한국, 영국, 미국
미부과(14개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독일,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자료: IBFD tax research database(접근일: 2018.4.13.)

❑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개정안 발의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과세항목별 탄력세율의 변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2018. 8. 30.	·증권거래세율 0.1%로 인하 - 유가증권: 0.15%→0.1% - 코스닥·코넥스: 0.3%→0.1% - 기타 주식: 0.5%→0.1%
	김병욱의원	2018. 11. 29.	·증권거래세율 0.15%로 인하 - 유가증권: 0.3%→동일 - 코스닥·코넥스: 0.3%→0.15% - 기타 주식: 0.5%→0.15%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조경태의원	2018. 11. 23.	·증권거래세 폐지 - 유가증권: 0.3%→0.15% - 코스닥·코넥스: 0.3%→폐지 - 기타 주식: 0.5%→폐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	2018. 12. 27.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단계적 폐지 - 과세항목별 세율을 매년 0.06%p씩 단계적 인하 - '20년 0.24%→'21년 0.18%→'22년 0.12%→'23년 0.06%→'24년 폐지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거래세율이 인하되면 과세기반인 거래대금이 증가함으로써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으나, 동 효과는 제외

○ 추계대상기간 중 과세대상 거래대금은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및 중기 경제전망」의 경상GDP 증가율 전망치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가정

- 경상성장률에 대한 과세표준의 탄력성은 '1'로 가정
- 향후 세액의 증가율은 경상GDP증가율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 각 시장별 과세대상 거래대금은 2016년의 시장별 비중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함

○ 주요 시나리오

- (시나리오1) 증권거래세율 0.5%→0.1% 인하

  *현행 탄력세율 기준: 유가증권 0.15%→0.1%, 코스닥 0.3%→0.1%, 기타 0.5%→0.1%

- (시나리오2) 증권거래세 폐지
- (시나리오3) 증권거래세율 0.5%→0.15% 인하

  *현행 탄력세율 기준: 유가증권 동일, 코스닥 0.3%→0.15%, 기타 0.5%→0.15%

- (시나리오4)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단계적 폐지: 매년 0.06%p씩 인하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수입 = 거래대금 × 세율변화분

- 거래대금은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시장으로 구분

3) 재정수입 증감

○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1	증권거래세율 0.1%로 인하	-3.0조원
시나리오 2	증권거래세율 즉시 폐지	-5.2조원
시나리오 3	증권거래세율 0.15%로 인하 (상장주식시장은 현행 세율 유지)	-1.8조원
시나리오 4	매년 0.06%p씩 인하 후 2024년 폐지	-4.8조원

- (시나리오 1) 증권거래세율을 0.1%로 인하하는 경우, 연평균 3.0조원(총 15.2조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시나리오 2)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경우, 연평균 5.2조원(총 26.1조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시나리오 3)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인하하는 경우, 연평균 1.8조원(총 8.9조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시나리오 4)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폐지하는 경우, 연평균 4.8조원(총 24.2조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증권거래세 -3,4조원, 농어촌특별세 -1.4조원

라. 참고사항

❑ 주식에 대한 과세는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으로 구성

○ 대부분의 선진국은 소액주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반면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음

○ 우리나라는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였고 과세기준*을 강화하여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등 양도소득세를 단계적으로 강화

* 유가증권 시가총액 기준: 현행 15억원→'20년 10억원→'21년 3억원 이하

6. 지방소비세율 인상: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 세율 15%를

- 20%로 인상하는 경우 연평균 4.6조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단, 지방세수는 4.6조원 증가 예상

가. 개 요

❑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세금임

○ 지방소비세가 2010년 5% 세율로 도입된 이후, 2013년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세율이 11%로 인상되었다 2019년부터 15%로 세율 인상

○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할 경우 부가가치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며, 반대로 지방소비세수는 국세 감소분만큼 증가

○ 다만, 내국세(부가가치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46%) 등이 각각 감소

❑ 지방재정의 여건 개선 및 재정분권의 방안 중 하나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가 제기

❑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개정안 발의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 (02-788-4838, hkkim@assembly.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 또는 대표발의	제안 또는 발의일자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장(대안)	2018. 12. 8.	지방소비세율 인상: 11%→15%
	이찬열의원	2016. 5. 30.	단계적 인상: 11%→20% (2017년부터 매년 3%p씩 인상)
	박맹우의원	2016. 5. 30.	단계적 인상: 11%→16% (2017년부터 매년 1%p씩 인상)
	김진표의원	2016. 11. 1.	단계적 인상: 11%→16% ('17년 13%)
	김민기의원	2016. 6. 9.	인상: 11%→16%
	김현미의원	2016. 7. 20.	단계적 인상: 11%→21% ('17년 16%)
	김정우의원	2018. 11. 1.	인상: 11%→15%

주: 1. 이찬열의원안, 박맹우의원안, 김진표의원안, 김민기의원안, 김현미의원안은 대안반영폐기(2018.12.8.) 위원장 대안이 본회의 통과(2018.12.8.) 되어 2019.1.1.부터 시행 중임
2. 동 법안과 함께 「지방세법」을 개정함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NABO의 부가가치세수 전망(2018.12.)에 대해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비율(지방소비세율)을 적용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수입 = 총부가가치세액 × 세율인상분

3) 재정수입 증감

○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20~2024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1	즉시 세율인상: 15%→20%	-4.6조원
시나리오 2	단계적 세율인상: 15%→20% (매년 1%p씩 인상)	-2.9조원

주: 이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려하지 않은 추정임

- (시나리오 1) 지방소비세율을 5%p 인상할 경우, 재정수입은 연평균 4.6조원(총 23.2조원) 감소하고, 지방세수는 연평균 4.6조원 증가 예상
- (시나리오 2) 지방소비세율을 매년 1%p 인상할 경우, 연평균 2.9조원(총 14.3조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라. 참고사항

❑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의 재정수입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할 필요

○ 내국세(부가가치세수) 감소로 인해 지자체의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46%) 등이 각각 감소

2019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

발간일 2019년 4월 15일

발행인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비용추계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88·3778)

ISBN 978-89-6073-170-7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9

건전한 재정
희망찬 미래

대한민국국회

1919 2019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100주년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0722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92-001628-10